

# 함께하는 FTA

March 2014 vol. 22

한·캐나다 FTA 타결 내용 집중 분석

파워 인터뷰: 최경림 통상차관보

2주년 맞은 한·미 FTA의 경제 효과 심층 탐구



## 봄 맞아!

완연한 봄, 숨죽었던 만물이 활발하게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겨우내 웜츠렸던 몸을 이제 풀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따사로운 봄볕처럼 우리의 삶에도 온기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3월, '함께하는 FTA'와 함께 봄맞이에 나서 볼까요?



박혜리 주한EU대표부 공보관

## “한국과 EU, 이미 절친한 파트너입니다”

박혜리 주한EU대표부 공보관은 인터뷰 요청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승낙했다. 주한EU대표부를 알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다. 유럽 28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경제공동체인 EU(유럽연합)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위의 시장이지만, 한국과의 교류·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한국인들이 EU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한국이 적극적인 교류파트너가 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주한EU대표부는 EU를 대표하는 공식 외교채널이다.

“한국과 EU는 생각보다 더 돈독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박 공보관은 얘기한다. 그 근거로, EU는 전 세계 10개국(미국·캐나다·브라질·남아프리카 공화국·중국·일본·한국·

인도·러시아·멕시코)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한국도 그 국가들 중 하나라는 것이다. 경제 규모나 국제적 영향력 면에서 한국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파트너로 삼고 싶을 만큼 성장했다. EU측은 특히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EU의 ‘뉴 제너레이션 FTA’의 첫 주자가 한국이었어요. 그 전에 EU가 맺었던 FTA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첫 FTA가 한·EU FTA입니다. 또한 EU는 한국과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상호 협력의 기반이 되는 협정)’를 맺었고, 조만간 ‘위기관리활동 기본참여협정(Crisis Management Act Framework Agreement)’에 서명할 예정인데, EU가 FTA,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 위기관리활동 기본참여협정의 3가지

를 모두 맺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2005년 프랑스 리옹3대학 대학원 졸업(국제법 전공) 후 홍보 전문가로 경력을 쌓아온 박 공보관은 2012년부터 주한EU대표부에서 일하고 있다. SNS, 웹사이트 관리 등의 온라인 홍보에서부터, 리서치·세미나·워크숍 진행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도맡고 있다.

박 공보관은 향후 EU와 한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분야로까지 협력하면 서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국과 EU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한국은 EU의 아시아 진출에 좋은 교두보가 될 수 있고, EU는 회원국 중 8개국이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만큼 한국의 평화적 안정을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❶

# contents

March 2014 vol. 22



##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4년 3월 19일(통권 22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044-203-4131)

발행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COVER STORY

3월 11일 한·캐나다 FTA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 11대 경제대국이지만, 우리나라의 제 25위 교역상대국에 그치고 있습니다. 캐나다 또한 미국·멕시코와의 교역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큰 만큼, 한·캐나다 FTA 타결로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지일러스트 안우정

March 2014 vol. 22

## FTA People



## Issue Focus

### 04

한·캐나다 FTA 타결의  
주요 내용과 의의

### 08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전국 확대 실시

## FTA Cartoon

### 09

원산지확인서!  
이젠 걱정 끝~  
안종만

## Power Interview

### 18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 FTA Lounge

### 20

정수기 제조업체  
영원코퍼레이션

## COVER STORY

### 10

한 눈에 보는  
2013년 FTA 무역 성과

### 12

2주년 맞은 한·미 FTA  
성과 심층 분석

### 14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과 현황  
최민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사무관  
이경희 신세계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 Leader's View

### 16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이후  
오세아니아 시장 진출 전략  
김영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Power Interview

### 18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 FTA Lounge

### 20

정수기 제조업체  
영원코퍼레이션

## 22

우리 회사 수출 1호:  
금성사 라디오

## 24

떡볶이: 한국의 '진짜 매운 맛'을  
보여주마

## FTA Study

### 26

자유무역의 역사—  
③GATT의 성과와 WTO의 과제  
이경희 신세계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 28

세계의 FTA—②ASEAN(아세안)  
명진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 30

원산지관리 실무—  
②자재명세서(BOM) 및  
제조원가계산서  
박중광 Ciel HS 대표/관세사

## 32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  
③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  
이민선 관세사

## 34

사후검증 따라잡기—  
③정보제공요청서 대응  
강동구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사후검증지원실 관세사

## Culture Prism

### 36

산돌에 물 주어 가르는 마음  
고득현 시인

## 38

독자와의 만남:

'맥베스' 주연배우 김소희

## 40

국내 유일 도메인 와이너리,  
샤또무주 탐방기  
명진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 FTA News

### 42

산업부, 주요 업종단체와  
통상현안 간담회 개최 등

## INDEX

### 44

FTA 용어 & 독자의 소리



한·캐나다 FTA 타결의 주요 내용과 의의

## 10년 내 품목 97% 이상 관세 철폐… 양국간 무역·투자 획기적 증가 기대

지난 3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한·캐나다 FTA는 2005년 7월 협상 개시 이래 수년간 협상이 중단되는 등 한국이 진행한 FTA 협상 중 최장 기간이 소요됐다. 양국 정상은 성명을 통해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FTA가 기급적 조속히 발표되도록 법률 검토와 필요한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는 G8 회원국으로 세계 11대 경제대국 (2012년 월드뱅크 기준)이나, 한국과의 무역규모는 99억 달러(수출 52억 달러, 수입 47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이는 캐나다의 대외무역이 미국, 멕시코 등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 국가에 집중(교역 비중 65%)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캐나다 간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큰

만큼, 한·캐나다 FTA 타결로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일본·EU보다 먼저 FTA 맺어**

캐나다는 현재까지 9건(파나마, 요르단, 콜롬비아, 페루, EFTA,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NAFTA)의 FTA를 체결했으나 NAFTA를 제외

하고는 교역규모가 크지 않다. 아시아 지역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FTA 협상을 타결하게 되어, 우리 기업들이 캐나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캐나다는 일본, EU 등 과장기간 협상 진행 중이며, 중국과는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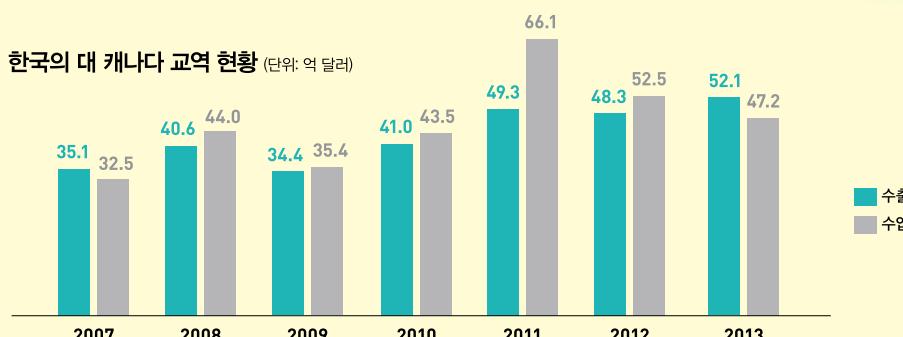
### CANADA 캐나다 개요

수도 오타와  
면적 9,984,670km<sup>2</sup>(세계 2위)  
인구 3,456만 명(2013년 추정, 세계 38위)  
명목 GDP 1조8,210억 달러(2012년, 세계 11위)  
1인당 GDP 5만2,219달러(2012년, 세계 9위)  
수출 4,587억 달러(2013년 추정, 세계 13위)  
주요 수출 대상국 미국(74.5%), 중국(4.3%), 영국(4.1%) (2012년)  
수입 4,710억 달러(2013년 추정, 세계 12위)  
주요 수입 대상국 미국(50.6%), 중국(11%), 멕시코(5.5%) (2012년)  
공식 언어 영어(58.8%), 불어(21.6%)  
회계연도 4월 1일~3월 31일

(자료: 인구·GDP—월드뱅크, 그 외—CIA)



### 한국의 대 캐나다 교역 현황 (단위: 억 달러)



※2013년 기준 캐나다는 우리의 제25위 교역파트너(수출 23위, 수입 25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또한 선진국이자 중요한 자원 대국인 캐나다와의 FTA는 우리 경제의 업그레이드와 자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는 석유 매장량 세계 3위, 석유 생산량 6위, 천연가스 생산량 4위, 우라늄 생산량 3위의 자원부국이다. 캐나다와의 FTA 체결로 한국은 세계 14위 경제대국(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브라질, 러시아, 이탈리아, 인도, 캐나다, 호주, 스페인, 멕시코 순). 한국은 15위) 중 9개국(일본·친·국가)과 FTA를 맺게 됨으로써 전 세계적인 FTA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중요하게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 자동차 수출관세 2년 내 철폐…

#### 점유율 상승 기대

한·캐나다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다. 상품 분야의 경우, 양국 모두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FTA로, 우리측은 품목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7%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캐나다측은 품목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4%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전체 캐나다 수출의 42.8%(2013년)를 차지하는

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3년, 실질적으로 24개월만에 철폐하기로 해, 현재 캐나다와 FTA 협상 중인 일본, EU에 비해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는 한·미 FTA와 비교 시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율(6.1%)이 미국(2.5%)보다 높을뿐만 아니라 관세철폐 기간 측면에서도 미국(발효 후 5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캐나다 자동차 시장을 개방한 것이다. 캐나다는 우리의 5대 자동차 수출시장으로, 자동차 관세가 24개월 만에 철폐될 경우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미국, 멕시코 업체와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다. 현재 캐나다 시장 내 한국차 시장점유율은 12%

로 FTA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캐나다 자동차시장 점유율은 미국(44.5%), 일본(33.6%), 한국(12.0%) 순이다.

자동차 비관세 분야에서는 상대국 원산지 차량이 자국 인천기준에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을 충족한 경우 각각 자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합의했으며, 완성차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미국산 부품에 대한 상호

누적을 인정키로 했다. 또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관세율 6%, 즉시/3년 철폐), 타이어(관세율 7%, 5년 철폐)에 대한 관세 철폐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완성차 업체로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섬유 분야의 높은 관세(평균 5.9%, 최대 18%)도 대부분 3년 내 철폐로 한·미 FTA 대비 높은 수준이며, 원산지도 한·미 FTA의 원사기

준(yarn-forward)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해, 향후 우리 중소기업의 대캐나다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냉장고(6%, 3년 철폐), 세탁기(8%, 즉시철폐) 등 가전제품과 섬유·화학기계(6.5%/8%, 즉시~5년 철폐)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그 외 우리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인 휴대폰,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농축산물은 전반적으로 한·미/한·EU FTA 보다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했으며, 육류 원산지에 대해서는 한·미 FTA와 동일(닭고기를 제외한 육류에 대한 도축 기준 인정)하게 합의했다. 전체 농산물 중 18.8%(품목수 282개)를 양하제외하거나 10년 초과 관세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해 한·미(12.3%)/한·EU(14.7%) FTA 대비 보수적으로 합의했다.

#### 한·캐나다 FTA 전체 상품 양허수준 비교

양허유형	우리 양허				캐나다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 (대캐나다)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대캐나다)	비중
10년 내	11,604	97.5	4,752	98.4	8,148	97.5	6,447	98.7
즉시	9,749	81.9	4,205	87.0	6,380	76.4	4,188	64.1
무관세	1,960	16.5	3,266	67.6	5,703	68.3	3,866	59.2
유관세	7,789	65.5	938	19.4	677	8.1	323	4.9
3년	502	4.2	255	5.3	1,403	16.8	2,072	31.7
5년	722	6.1	184	3.8	363	4.3	186	2.9
6년	2	0.0	0	0.0	–	–	–	–
7년	12	0.1	76	1.6	–	–	–	–
10년	612	5.1	29	0.6	2	0.0	0	0.0
세번분리	5	0.0	4	0.1	–	–	–	–
10년 초과	77	0.6	52	1.1	25	0.3	84	1.3
세번분리	5	0.0	4	0.1	–	–	–	–
계절관세	1	0.0	0	0.0	–	–	–	–
현행관세	2	0.0	0	0.0	–	–	–	–
양허제외	211	1.8	22	0.5	181	2.2	0	0.0
총합계	11,900	100	4,831	100	8,354	100	6,530	100

(품목수는 HS코드 2011년 기준, 수입액은 2009~2011년 평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시장 개방 확대, 학교급식 예외 확보**  
상품 시장 개방 이외에도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 확대 및 규범 측면에서 WTO 플러스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제도 선진화 달성을 기대할 수 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캐나다는 NAFTA 발효시점(1994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우리측에 자동 부여하도록 했으며 우리측은 한·캐나다 FTA 발효 시점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캐나다측에 자동 부여하게 된다.

정부조달 분야는 개정 GPA 대비 중앙정부 기관의 조달 양허 하한선을 인하함으로써 FTA를 통한 조달시장이 추가 개방된다. 개정 GPA에서 양국은 13만 SDR 이상의 중앙정부기관 상품, 서비스 조달시장을 개방했으나 한·캐나다 FTA에서는 7만 SDR을 기준으로 양국 화폐로 환산해 개방(한국측 1억 원, 캐나다측 10만 캐나다달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예외를 확보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WTO 합의 수준을 상회하는 조항을 통해 지재권을 폭넓게 보호하기로 했으며, 소리상표 및 유명상표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지리적표시와 관련해 우리측은 캐나다측 관심품목 2개(캐나다 위스키, 캐나다 라이 위스키)를, 캐나다측은 우리측 관심품목 4개(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수삼, 이천쌀)를 지리적 표시로 보호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 타결과 관련해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피해 분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내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협상 타결 이후, 정부는 협상 결과를 반영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 타결 등으로 인한 축산 분야 피해 보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품 분야의 경우, 우리측은 품목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7%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캐나다측은 품목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4%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 캐나다에서 본 한·캐나다 FTA 아시아 경제협력의 발판으로서 환영, 자동차업계는 크게 반발

글 김종상 KOTRA 밴쿠버 무역관 과장



일러스트 서용남

캐나다는 2013년 경제실천계획(Economic Action Plan 2013)에 따라 한국을 포함, 72개 국을 일반특혜관세(GPT·General Preferential Tariff) 리스트에서 제외키로 했었다. 해당 조치로 한국은 2015년 2월부터 캐나다 수출시 무관세 또는 10% 이하 저관세 등 개발도상국으로서 받았던 혜택에서 제외될 예정이었다. GPT 혜택 제외로 한국은 최혜국관세(MFN)를 적용 받아 전반적으로 3~6%이었던 관세가 최대 16~18%까지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한·캐나다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 기업은 GPT 제외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GPT가 적용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점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한·캐나다 FTA 타결로 캐나다 산업계에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자동차업계의 경우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6.1% 관세가 3년에 걸쳐 완전 폐지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 2014년 1월 포드사가 FTA의 유해성을 캐나다 정부에 호소하며 협상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캐나다 자동차산업 최대 지역인 온타리오주에서는 업계와 노조가 한·캐나다 FTA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캐나다 하원 정원 308석 중 보수당이 과반수인 162석을 보유하고 있고 온타리오주 기반 보수당 의원이 72명에 이른다. 이들은 자동차업계의 반대 목소리를 묵과할 수 없을 것이다.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계, 항공업계, 농수산업계 및 금융계는 한·캐나다 FTA의 타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농수축산물의 수출비중이 높은 BC(British Columbia)주는 FTA 체결에 매우 적극적이다. BC주 무역부장관 테레사 와트(Teresa Wat)는 지난해 한국에 대한 수출이 30% 감소한 15억 달러에 그쳤다면 FTA가 조속히 체결되지 않으면 한국시장을 미국, EU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캐나다 FTA 체결로 관련 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식품관련 전시회에 BC주 소재 식품수출 업계의 참가 문의가 눈에 띄어 늘어나고 있다.

대미 무역의존도를 줄이고 아시아와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하는 캐나다 정부로서도 한·캐나다 FTA 체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캐나다 보수당 정권은 재집권을 위해 한국, 인도, 일본, EU와의 FTA 뿐 아니라 TPP에도 참여하는 등 시장 개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는 북미 위주의 무역 구조에서 탈피해 아시아, 유럽 등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캐나다 재계는 한국과의 FTA를 동북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평가하고 있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전국 확대 실시

## 원산지 판정 불확실성 감소…사후검증 리스크 관리 가능

2014년부터 협력사와 수출업체가 원산지확인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신뢰도가 있는 제3의 기관이 원산지확인서가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주는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창원상공회의소는 2월 19일 창원상의에서 2014년 제3자 원산지확인서 확인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창원상공회의소 3개 기관은 협력사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부담 완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14년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상의는 경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2013년에 제3자 확인 시범사업을 자체 시행한 경험이 있고, 도내 협력사가 많아 전국 16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를 대표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은 2013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전국의 16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에서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8개 지역센터(경남·부산·인천·대구·광주·경기남부·충남·경북)는 연초부터 사업을 시행(2~12월)하고, 나머지 8개 지역(대전·울산·전북·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제주)은 준비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7~12월)할 계획이다.

그동안 협력사는 근거서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판정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수출자는 협력사가 제공하는 확인서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추가 증

빙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제3자 확인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지역FTA센터)이 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적합성을 검토·확인하고, 확인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사업이다. 협력사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보다 정확한 원산지 확인서 작성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출자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 감소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진다.

조용만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사진 가운데)은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의 의의를 설명한 후, "지금까지의 FTA 활용지원정책이 수출업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서
<b>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신청방법</b>	
사업기간 2014년 3월 1일부터 (8개 지역센터부터 시행하되 나머지 지역은 하반기 시행)	
접수기간 수시접수	
기업부담 없음	
지원분야 원산지확인서 검토 후 원산지 확인 결과서 발급 - HS코드 일치 여부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일치 여부 - 자재명세서(BOM), 원가산출내역서, 제조공정도 등 검토 - 근거서류 보관방법 교육 및 기타	
신청대상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는 중소기업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기업(원재료로 납품과 수출을 병행하는 기업) 등 원산지 관리 능력이 있는 기업은 제외	
신청방법 지역센터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문의 각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 원산지확인서! 이젠 걱정 끝~

안종만



한 눈에 보는 2013년 FTA 무역 성과

## FTA 효과, 수출 증가로 입증... 외국인 직접투자도 꾸준히 증가

2013년 한국은 FTA 발효국과의 교역 확대에 힘입어 3년 연속 무역규모(수출+수입) 1조 달러를 달성하는 한편, FTA 발효국과의 무역에서 큰 폭의 무역흑자(453억 달러)를 실현했다. 또한 FTA 허브 구축 등으로 우리나라의 투자매력도가 상승해 지난 5년 간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기준)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2013년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은 36.0%로 전년(34.8%) 대비 1.2%p 늘어났다. FTA 발효국과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2.9% 증가해, 한국의 전체 교역량 증가율 0.7%보다 높았다. FTA 발효국과의 수출 증가율은 3.5%로 역시 전체 수출 증가율 2.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무역에서 FTA 무역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FTA 발효국과의 무역수지 증가율은 8.8%로, EU와 페루를 제외한 모든 발효국과의 무역수지가 개선되거나 유지되었고, 특히 미국·터키·ASEAN과의 흑자규모가 확대됐다. FTA 협상이 진행중인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17.3%로 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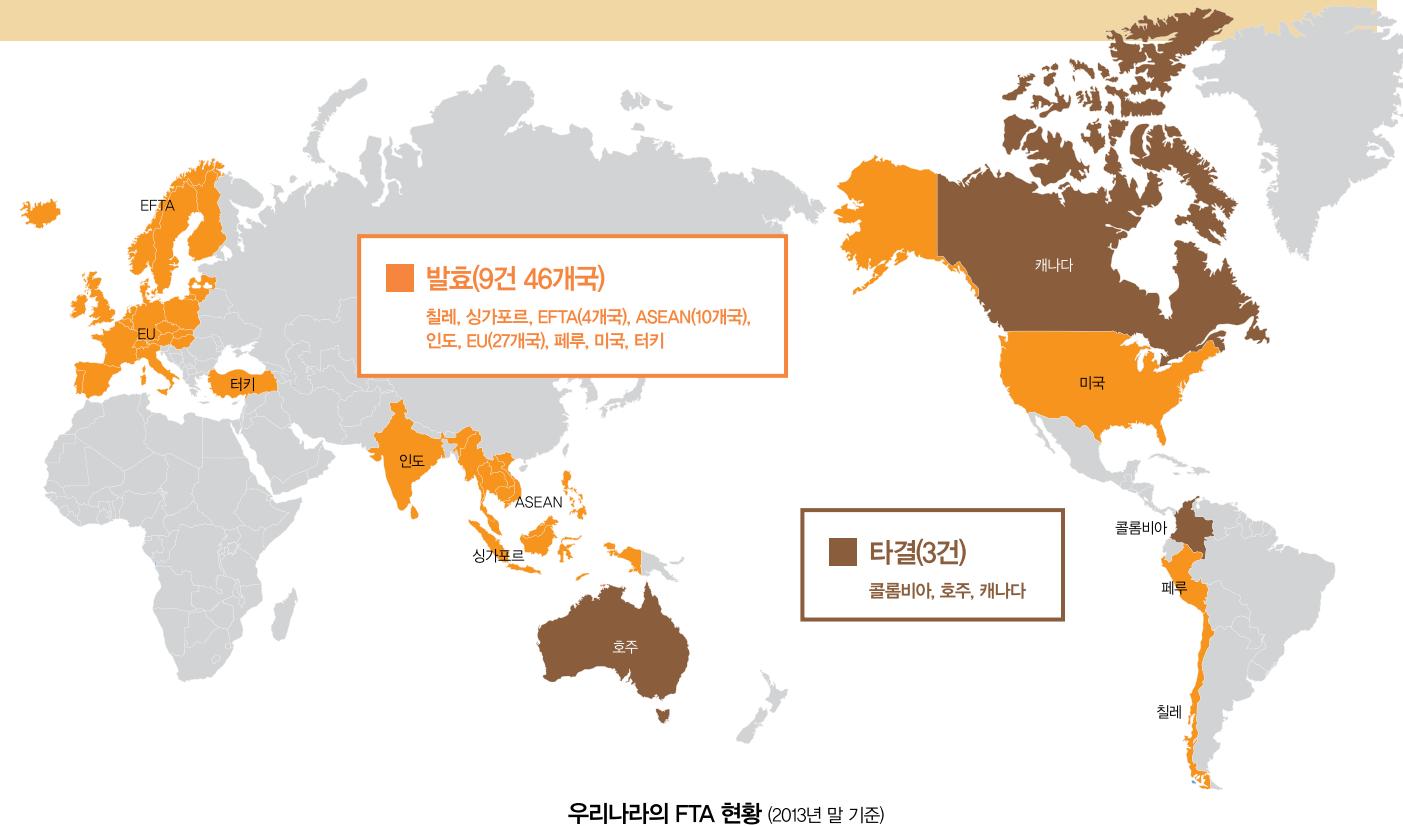
증가했는데, 이에 힘입어 지난해 한국의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55.9%가 늘어났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9년을 바탕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는 일본(-40.7%)과 중국(-33.8%)으로부터의 투자유치가 급감해 한국의 대세계 투자유치는 전년보다 10.7% 하락했다. 그러나 FTA 발효국으로부터의 투자는 10.8%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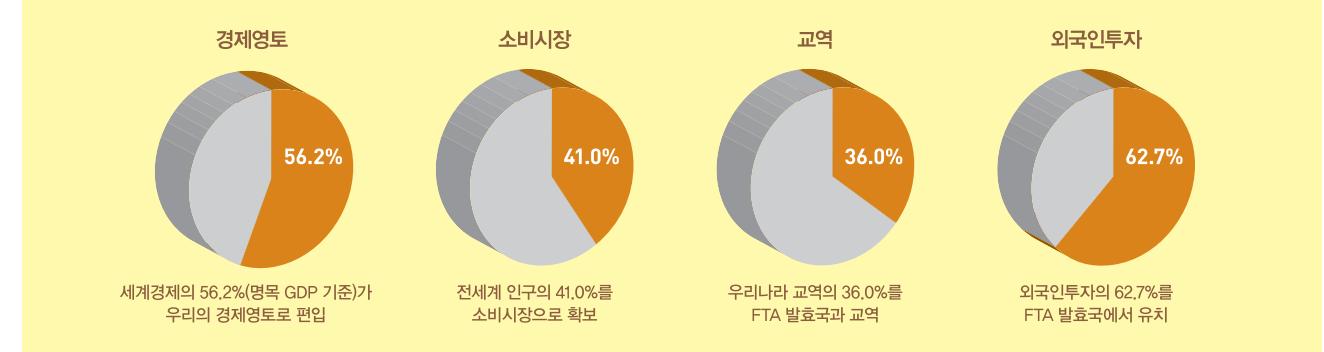
### FTA 발효국의 수출 증가가 전체 수출 증가보다 커

주요 FTA 발효국과의 무역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한·미 FTA 발효 2년차인 2013년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6.0% 늘었고, 수입은 4.2% 감소했다. 특히 FTA 혜택품목의 수출은 6.2% 늘었고, 수입은 6.9% 증가했다. 한편 무역수지는 한·미 FTA 1년차인 2012년 30.5%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34.9% 증가했다. FTA 수출활용률은 2012년 말 68.9%에서 2013년 말 76.1%로 증가했다.(한·미 FTA의 보다 자세한 성과는 다음 페이지 기사 참고)

지난해 발효 3년차를 맞은 한·EU FTA의 경우, EU의 경기위축 상황에서 교역규모는 늘어났지만 석유제품 및 항공기 등의 수입증가로 적자폭은 확대됐다. FTA 혜택품목의 경우 수출은 8.8%, 수입은 9.7% 늘어났다. EU로부터의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76.9% 늘어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EU FTA의 수



우리나라의 FTA 현황 (2013년 말 기준)



출활용률은 80.8%로 높은 편이다.

대ASEAN 수출은 2012년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가 2013년 ASEAN 국가들의 경기침체로 증가율이 3.6%로 둔화됐다. ASEAN은 FTA 발효 전인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의 수출은 연평균 14.4% 증가하며 같은 기간 대세계 연평균 증가율(8.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7년간 수입 역시 연평균 8.7% 증가해 대세계 증가율(7.6%)를 상회하고 있다. 한·ASEAN FTA의 수출활용률은 38.7%로 다소 낮은 편으로, 다소 낮은 양허수준과 통관절차 애로 등은 향후 개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그 밖의 FTA 상대국 또한 발효 이후 대세계 연평균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가 우리 기업에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칠레는 2004년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이 4.5배 늘었고, 당초 우려와 달리 국내 피해는 제한적이었다. EFTA는 유럽재정위기의 영향 및 공산품 개방 수준이 FTA 이전부터 높았던 점 등으로 FTA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었다.

인도와는 2010년 1월 CEPA 발효 직후 수출 및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12년 이후 다소 주춤한 상태다. 페루의 경우 자동차·가전제품·합성수지 등 FTA 혜택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지난해 5월 FTA가 발효된 터키는 수출(24.3%), 수입(2.9%) 모두 증가세로 돌아서고, 무역수지 또한 전년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2013년 FTA 발효국별 교역 현황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구분	수출			수입			교역			무역수지		
	2012	2013	증감률	2012	2013	증감률	2012	2013	증감률	2012	2013	증감률
대세계	5,479	5,596	2.1	5,196	5,156	-0.8	10,675	10,752	0.7	283	441	55.9
대FTA국	2,090	2,163	3.5	1,673	1,710	2.2	3,763	3,763	2.9	416	453	8.8
칠레	25	25	-0.3	47	47	-0.4	71	71	-0.4	-22	-22	-
EFTA	15	24	63.3	77	64	-16.9	92	88	-3.9	-62	-40	적자 감소
ASEAN	791	820	3.6	520	533	2.6	1,311	1,353	3.2	273	287	5.5
인도	119	114	-4.5	69	62	-10.7	188	176	-6.8	50	52	4.0
EU	494	489	-1.0	504	562	11.6	997	1,051	5.3	-10	-74	적자 증가
페루	15	14	-2.2	16	20	21.0	31	34	10.0	-2	-5	적자 증가
미국	585	621	6.0	433	415	-4.2	1,019	1,036	1.7	152	205	35.3
터키	46	57	24.3	6.7	6.9	2.9	52	63	21.6	39	50	28.0

\*싱가포르는 ASEAN에 포함되므로 ASEAN에만 계상.

터키는 2013년 5월에 발효했으나, 연간 비교를 위해 2012년 대FTA국에 포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주년 맞은 한·미 FTA 성과 심층 분석

## 관세인하 품목 수출 증가로 대미 무역수지 매년 증가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지 2년을 맞았다.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자 정치·사회·문화적으로도 영향력이 큰 국가로 다른 FTA에 비해 국내의 관심과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지난 2년간 한·미 FTA 혜택품목은 수출·수입이 동시에 증가하고 투자유치도 크게 확대되는 등 우리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 후 2년간 FTA 혜택품목은 자동차부품과 석유제품 등의 증가에 힘입어 2년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대미 수출과 무역수지도 증가하는 추세다. 사진은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국내 한 중소기업.

미국은 전 세계 GDP의 22.5%(16.2조 달러, 2013년 IMF)를 차지하며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우리나라의 2위 수출상대국이자 3위 수입상대국이다. 전체 교역량으로는 중국(2,289억 달러), EU(1,051억 달러)에 이어 우리나라의 3위 교역 상대국(미국: 1,035억 달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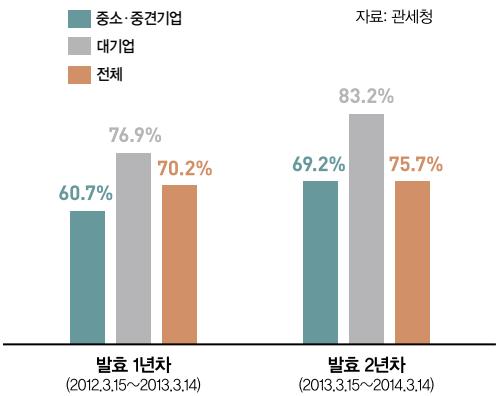
한·미 FTA 발효 후 2년간(오른쪽 위 표의 ③+④)의 교역성과를 발효 전 2년(①+②)과 비교해보면, 대미 수출(10.3% 증가)은 대세계 수출(6.0% 증가)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입은 3.8% 감소한 반면 대세계 수입은 5.3%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미 교역규모가 발효 전 2년간에 비해 증가했다.

### 자동차부품·석유제품 등 2년 연속 수출 증가

발효일 전후 1년씩을 비교해 보면 ②와 ③ 비교), 대미 무역규모는 FTA 발효 전과 거의 유사하나(1,043억 달러→1,044억 달러) 무역수지는 증가(117억 달러→168억 달러)했다. 이는 FTA 발효 전에 수출은 증가(7.1%)하고 수입은 감소(-8.6%)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FTA 혜택품목(관세 인하·철폐 품목)은 자동차부품과 석유제품 등의 증가에 힘입어 2년 연속 수출이 증가(1년차 1.6%, 2년차 5.4%)했다. 비혜택품목 수출은 1년차에 감소(-3.5%)했으나, 2년차에 증가(5.7%)했다. 이는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1년차에 크게 감소했다가 LTE(4세대 이동통신) 시장의 급성장

### 우리나라 기업의 한·미 FTA 수출활용률



### 한·미 FTA 발효 전후 한미 교역현황

	①발효 2년 전 (2010.3.15~2011.3.14)	②발효 1년 전 (2011.3.15~2012.3.14)	③발효 1년차 (2012.3.15~2013.3.14)	④발효 2년차* (2013.3.15~2014.3.14)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대(對)세계	4,895	4,455	5,601 (14.4%)	5,355 (20.2%)	5,491 (-2.0%)	5,168 (-3.5%)
대(對)미국	517	414	580 (12.2%)	463 (11.8%)	589 (1.6%)	421 (-9.1%)
FTA 혜택품목	—	—	210	207	232 (10.5%)	218 (5.3%)
FTA 비혜택품목	—	—	370	256	357 (-3.5%)	203 (-20.7%)

\*동기간 비교를 위해, 2014년 2월 28일까지 집계된 수치를 활용해 변환한 값 사용

단위: 억불, 전동기비(%)

자료: 관세청

등에 따라 2년차에 급증했고, 자동차 수출이 한국차의 품질 및 브랜드 상승에 힘입어 두 기간 연속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대미 수입의 경우 원동기 및 펌프, 농약 및 의약품 등 혜택품목 위주로 증가(10.1%)해 비혜택품목 감소(-23.8%)를 일부 상쇄했다. 비혜택품목의 경우 반도체, 항공기 및 부품 등의 수입 부진으로 두 기간 연속 감소했다. 발효 2년차 한·미 FTA 수출활용률은 76.1%로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의 활용률이 중소·중견기업보다 여전히 높지만, 중소·중견기업의 활용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 FTA 발효 이후 대미 투자유치 82.5% 증가

한편 한·미 FTA 발효 이후 2년간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는 발효 전 같은 기간(44억 달러)에 비해 82.5% 증가(80억 달러)했다. 2013년 말까지의 누적 투자총액은 533억 달러로 국내 총 외국인직접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형태별로 보면 인수합병(M&A) 투자(862.1%)뿐만 아니라 신규공장 설립 등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53.2%)도 모두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93.3%) 및 서비스업(58.9%) 모두 증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유치돼 국내산업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우려됐던 농식품 분야의 경우 한·미 FTA 발효 2년차(2013년 3월~2014년 2월) 수출은 발효 전(2011년 3

월~2012년 2월)보다 21.4% 증가, 발효 1년차보다 9.5%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담배류(80.1%), 기타음료(46.2), 라면(27.6), 빵(80.2), 고추장(48.4) 등 가공식품 수출은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전체 농식품 수출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차와 2년차에 발효 전 대비 각각 7.6%와 8.8% 늘었다.

발효 2년차 미국산 농식품 수입은 북미지역 가공 등에 따른 곡물류 수입 감소 및 축산물 수입 감소로 발효 전(2011년 3월~2012년 2월)보다 20.2% 감소(75.1억 달러→59.9억 달러)했다. 축산물의 경우 국내산 공급확대(돼지고기, -41.4%), 소비패턴 변화(닭고기, -46.1) 등으로 수입이 감소(-12.0%)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한·미 FTA를 포함한 대FTA 발효국의 교역·투자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FTA 성과를 지속점검하고 지원정책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추진 중인 'FTA활용촉진종합대책(2013년 6월 시행)'의 내실화방안을 수립(2014년 5월 예정)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대FTA 발효국의 투자유치 성과점검을 계속하고, 대FTA 발효국뿐만 아니라 FTA 혜택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변국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산업에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보완대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완대책 현장점검, 성과 관리, 관련 전문가·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취약산업 지원 체감도와 경쟁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과 현황

## 한·칠레 FTA 발효 때 도입... 지난해 한우·한우송아지 농가에 지급

정부는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과수·축산 등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가 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등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밭농업 직불제, 농식품분야 연구개발(R&D) 강화 등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FTA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보전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대표적인 FTA 국내보완대책이다.



피해보전직불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 전, 개방에 준비되자 않은 상황에서 수입이 급증했을 때 농업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장치다. 2013년에 지원대상품목이 된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대해서 총 248억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되었다.

FTA 체결에 따라 체결국으로부터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고,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접적 피해보전제도는 대표적인 농업분야 FTA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이들 제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 1. 피해보전직불제

한·칠레 FTA 대책으로 처음 도입된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에 따라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피해보전직불제는 농

업의 경쟁력 강화 전, 개방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이 급증했을 때 농업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장치다. 단기적 피해보전대책

으로서 피해보전직불제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시행되었고, 한·EU FTA 및 한·미 FTA 대책으로 2012년까지 연장됐다.

피해보전직불제의 지급대상품목은 매년 선정된다. 우선 협상에 따라 관세가 감축되거나 관세할당률량이 증가하는 등 양허대상 품목이어야 한다. 이러한 품목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다.

① 우선 가격 하락이라는 피해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품목의 해당연도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해야 한다. 기준가격은 해당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의 90%이다.

② 또한 이러한 가격 하락이 FTA 체결로 인한 수입급증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해당연도의 해당품목의 총 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초과해야 하고, ③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보다 증가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선정된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을 생산한 농업인은 지자체 신청을 통해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생산면적×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지급단가×조정계수'로 산출되며,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

### 피해보전직불제 개요

- 목적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
- 대상품목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률량이 증가하는 모든 품목
- 지급기준 다음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적용금 지급
  - ① 가격요건: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 이하로 하락
  - ② 총수입량요건: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보다 증가
  - ③ 수입량요건: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보다 증가
    -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수입피해발동계수
- 산출방법 생산면적×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지급단가×조정계수
  - ① 축산업: 출하 마릿수×지급단가×조정계수
  - ② 지급단가: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90%
  - ※ 차액=(직전 5개년 간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간 평균가격×0.9)-해당연도 평균가격×0.9
  - ③ 조정계수: (지급 가능 보조액/지급 신청 총액)×수입기여도
    - 농업법인 5,000만 원, 농업인 3,500만 원
- 상한액

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이어야 한다. 이 품목 중에서 재배·사육을 하기에 투자비용이 크고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하거나,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재배·사육하여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한다.

한·칠레 FTA 대책의 일환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키위·복숭아·시설포도에 대해서 2004년~2008년까지 폐업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2007년 한·미 FTA 대책 수립 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3년에 한우가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되어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지급을 진행 중이다.

### 대상품목은 전년 가격·수입량 분석, 매년 새롭게 선정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대상품목이 전년도 가격과 수입량을 분석하여 선정되므로 매년 상반기 농업인 등 지원센터의 발동요건에 대한 조사·분석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원대상품목으로 고시하도록 되어있다. 2014년에도 발동요건에 대한 조사·분석이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여부 및 대상품목이 결정될 예정이다.❶

의 90%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한·칠레 FTA 대책으로 2004년 처음 도입된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없어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 2012년 한·미 FTA 대책으로 발동 요건이 완화되고, 보전비율이 상향조정되었고, 2013년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최초로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되었다. 2013년에 지원대상품목이 된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대해서 총 248억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되었다.

### 2. 폐업지원제

폐업지원제는 FTA의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 등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FTA로 피해를 본 품목 중에서 투자비용이 크거나 재배·사육 기간이 긴 품목의 폐업을 막설이는 농업인에게 3년간의 순수익을 보전해 사업전환기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한 제도다.

폐업지원금은 해당 품목의 순수익의 3년치를 지급하고 있으며,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해당 품목은 5년 동안 재배·사육할 수 없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이 되려면 우선 피해보전직불금 지

### 폐업지원제 개요

- 목적 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 선정기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이면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 ① 투자비용이 크면서 폐업 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한 경우
  - ② 재배·사육 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곤란한 경우
  - ③ 그 밖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지급기준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아선·어구·시설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 단, 시행령 제7조제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 ① 품목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 ② 건축·도로개설 등 농어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거·폐기하는 경우
    - ③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되는 등 장관이 인정한 경우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지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함'
- 산출방법 철거·폐기 면적×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3년
  - 축산업=출하 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3년
- 시행시기 한·EU FTA 발효일(2011년 7월 1일)부터 5년



글 김영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이후 오세아니아 시장 진출 전략 자원 개발·낙농 협력 통해 기술·투자 노하우 배워야

한·호주 FTA가 지난 2013년 12월 5일 한·호주 7차 FTA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협정문의 서명 및 국회비준이 예상되고 있다. 2009년 5월 한·호주 양국간 FTA 공식협상이 시작된 이래, 2010년 5월 5차 협상 이후 쇠고기·낙농품·투자자국가소송제도(ISA)분야 등 쟁점분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약 3년간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2013년 호주 당국이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양자간 FTA의 조기타결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쟁점사항 중 농축산물의 관세유예에 대하여 호주정부가 상당한 유연성을 보이면서 결국 협상타결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호주 측의 유연한 협상전략의 결과, 호주는 거의 모든 대한국 수입품에 대하여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대호주 수입액의 92.4%(품목기준 90.8%)에 적용되는 관세를 8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호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76.6%에 해당하는 가솔린 소형차, 가솔린 중형차에 적용되던 관세 5%가 즉시 철폐되며, 나머지 23.4%의 자동차 수출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3년 내에 철폐된다. 기타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전기기기, 일반기계에 적용되던 5%관세율도 즉시 철폐된다.

한편 한국의 관세율 철폐의 경우, 농산물 중 쌀, 분유, 과실, 대두, 감자 등 민김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쇠고기 등 509개 품목은 10년 이상 관세가 유지되면서 점진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도록 보수적 농산품 시장개방이

이뤄졌다. 또한 한국의 대호주 주요수입제품인 철광석, 원유, 천연가스 등에 대해서 적용되던 3% 내외의 수입관세도 5년간에 걸쳐 철폐된다.

### 호주 시장규모 작아, 자원개발 협력 강화에 중점

한국의 전체수출시장에서 호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7%(2013년)에 그친다. 한국의 대호주 수출품 구조를 보면, 승용차가 최대품목으로 22.8%, 경유제품이 20.9%, 휘발유가 7.7%, 자동차부품이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이번 한·호주 FTA에 의해, 승용차에 대하여 5%의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부품도 1~10%의 관세가 철폐되지만, 경유 및 휘발유제품의 경우, 이미 무관세로 수출을 해왔기 때문에 관세인하율이 0%이다. 그 결과,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과 가전제품 등의 제조업체들은 호주 수입시장의 가격탄력성만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호주 자동차시장에서 한국승용차의 시장점유율은 10%인 반면, 일본차의 비중이 55%로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이 미국(25%)인 시장구조에서, 단순히 한·호주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 인하 효과 자체만으로는 한국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호주 소비자들의 보수적 특성을 감안하여, 한·호주 FTA 체결 효과에 대한 홍보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의 품질 등 제품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활동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호주 FTA를 단순히 호주시장 진출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그 의미가 제약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호주의 인구는 2,300만 명 수준으로 시장규모 자체가 기존의 대형 FTA 상대국에 비해 작은 편이며, 호주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이 매우 보수적이어서 단기간에 걸친 획기적인 시장점유율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한·호주 FTA를 통해 체결된 투자협정 및 다양한 투자제도정비의 결과, 한·호주 간 자원협력개발 및 서비스부문의 공동협력 가능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호주는 다양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 등 대규모 해외투자금융업도 발달해 있는 만큼, 이번 한·호주 FTA를 통해 호주의 자원개발부문에서 한국의 자원개발업체와 호주의 PF 금융기관 및 한국의 해외 PF 금융기관 간의 복합협력체제 등을 활성화시켜, 안정적 자원개발 효과뿐만 아니라, 한국 금융기관들의 국제적 금융기법선진화 및 금융기관의 전략적 네트워킹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부문에서의 다양한 복합협력이 확산될 경우, 자동차, 가전제품 등 전통적 제조업체제품의 시장 이미지 제고 효과도 동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호주 FTA의 결과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나타날 철광석 및 원유제품에 대한 한국측 관세철폐와 점진적으로 진행될 축산물에 대한 한국수입관세 철폐는, 한국의 철강산업 및 에너지산업의 비용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다양한 추가적 자원개발프로젝트의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교적 엄격한 호주의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원개발기법과 앞선 환경관련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 환경관련기업 및 연구소와 전략적 협력을 확대할 경우, 호주 내 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환경관련 기술수준 제고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호주의 청정축산업과 한국의 기업형 축산업간의 전략적 제휴기회를 높여, 호주 축산제품이 한국 축산업의 위협요인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형 축산업이 호주 축산환경을 활용한 축산투자 등으로 다양한 협력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호주 FTA를 통해 한국은 안정적 자원개발효과와 더불어 호주의 발달된 자원개발 금융기법을 배우고 금융기관의 전략적 네트워킹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뉴질랜드의 선진 낙농업과 기술협력 확대 필요

한·호주 FTA와 함께 한·뉴질랜드 FTA도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질랜드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뉴질랜드 수출품목 구조는 호주와 거의 유사한 반면, 수입의 경우 원목과 낙농제품이 주를 이룬다는 특징이 있다. 뉴질랜드시장이 한국의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0.26%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뉴질랜드 주력 수출품목인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이미 무관세수출을 하고 있으며, 2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약 5%에 달하는 수입관세가 철폐되어 일정한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역시 획기적인 증가율보다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경우도, 뉴질랜드의 선진 낙농업과 목재가공업 및 관광산업 등 뉴질랜드의 비교우위 산업과 우리나라 낙농업 간의 공동기술개발 및 산업협력 체제를 확대하는 전략이 실질적인 한·뉴질랜드 FTA 체결 효과의 확산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❶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 “FTA 네트워크 지속적 확대… 국내 소통 강화로 피해 최소화할 것”

통상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외교부 직원들의 복귀로 통상업무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의 통상업무에 대한 평가와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조직개편(2013년 3월)으로 산업부가 통상업무를 담당하게 된 지 1년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정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내 기존 인력과 외교부에서 전입한 인력이 잘 융합되었고, 서로의 전문성을 잘 발휘해 큰 차질 없이 통상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부처간 협업도 큰 갈등 없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3월 조직개편 이후 우선 산업과 통상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신통상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대외 통상협상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 3월 정부조직개편 이후 최 차관보는 1년 동안 한·중 FTA 협상 1단계 완료, WTO 밸리 패키지 타결, 한·호주 FTA 타결, 한·캐나다 FTA 타결 등을 이끌어내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올해는 한·중 FTA 2단계 협상과 TPP 참여여부 결정을 위한 예비양자협의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로드맵’을 수립(2013년 6월), 이를 토대로 산업계, 전문가, 이해단체 및 국회와 통상협업커뮤니티를 구축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또한 FTA 네트워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중 FTA 협상 1단계 완료, 한·호주 FTA 타결, 한·캐나다 FTA 타결, WTO 밸리 패키지 타결 등의 성과도 거뒀습니다.

산업부는 외교부 인력 복귀 이후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어학 능통자, 상무관 경험자 등 부내 통상 전문 인력을 통상 관련 부서에 배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 파견자에 대해서는 파견연장, 일반직 전환을 통해 복귀를 최소화하고, 향후 주요 국과장 직위를 개방해 통상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 전 부처에서 외국어에 능통한 통상 전문 인력을 스카우트 하는 등 문호 개방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2월에 업무보고도 있었는데요, 올 한해 통상정책 추진방향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개방정책의 기조는 변함이 없고, FTA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것입니다. 우선 한·중 FTA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영연방 3개국과 더불어 아세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성공적인 타결이 1차적 목표입니다. 또한 쌀 관세화 문제, TPP 참여 여부 등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 하는데, 소통을 최대한 잘해서 불필요한 갈등 없이 잘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 시 어려워하는 원산지문제 등에 대한 해결 노력을 통해 수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돋고, 특히 중국에서 우리 농수산물을 수출상담회 등을 열어 좋은 호응을 얻었는데, 올해는 이러한 활동을 보다 활발히 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 사업에 대해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중 FTA 협상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으며, 구체적인 타결시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양국간 모델리티에 대한 합의(품목수 90%, 수입액 85% 개방) 도출로 1단계 협상을 타결(2013년 9월)하고, 2013년 11월부터 2단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9차 협상까지 전품목(100%) 상품 양허안 교환 및 거의 전 분야에 대한 통합협정문 작성을 마쳐, 본격 협상 진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한·중 FTA 제10차 협상은 올해 3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으로, 한·중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FTA를 마무리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는 있으나, 종료시한을 따로 정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TPP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업무보고에서는 3월중 예비 양자협의 결과 및 국내 영향분석, 추가 공청회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최근 예비 양자협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TPP 참여 12개국(미국·멕시코·칠레·페루·말레이시아·싱가포르·캐나다·호주·브루나이·뉴질랜드·베트남·일본)과의 제1차 TPP 예비 양자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TPP 관심표명에 대한 TPP 참여국들의 전반적인 환영 입장을 확인했는데요, TPP 참여국들은 공통적으로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TPP 목표 수준에 우리나라가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미/한·EU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향후 TPP 참여를 결정할 경우에는 TPP가 지향하는 목표수준을 충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TPP 참여국과의 양자협의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TPP 참여국과의 제1차 예비 양자협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3월 중순 이후부터 제2차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중 FTA, 한·호주 FTA 등으로 농업분야의 원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❶



최경림 차관보 약력

1958년생, 1980년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1986년 미국 코네티컷대 국제정치학 석사. 1982년 외무부 입부(제16회 외무고시). 2001년 세계무역기구장. 2002년 주제네바总서관. 2005년 자유무역협정제1교섭관. 2007년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 2009년 주브라질대사. 2012년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현).

피해가 예상 되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한·중, 한·호주 등 FTA에 대한 농업인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감안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선, 양허제와 부분철폐 등 예외적 취급이 가능한 민감 또는 초민감품목군에 농산물을 우선 고려해 시장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대책은 한·중 FTA 등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협상과 연계해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먼저, 기존 FTA 보완대책을 평가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으로, 피해보전지불제를 보완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고, 보완대책 현장점검을 강화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피해보전지불제 보전비를 상향(90→100%)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우리 고품질 농수산식품의 중국시장 진출 등 농축수산분야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하는 중국 식품시장 선점을 위해 마케팅·생산·유통 등 수출 단계별 지원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❶

정수기 제조업체 영원코퍼레이션  
깐깐한 해외 바이어도 '수질'에 만족…  
한·EU FTA 이후 유럽 주문 쇄도



인천 남동공단의 정수기 제조업체 영원코퍼레이션은 한·EU FTA 발효 이후 EU로의 주문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세인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사진은 해외영업을 담당하는 박성윤 팀장, 장지윤 사원(위), 정혜영 사원(아래), 다키하시 마키 사원, 김은경 과장(왼쪽부터).

영원코퍼레이션은 2003년부터 해외 바이어의 요청으로 탄산정수기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탄산정수기 붐이 일면서 내수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정수기·냉온수기의 구조는 간단하다. 물을 저장하고 내보내는 저수조, 물을 냉각시키거나 데우는 냉각기·온열기, 그리고 콤프레서, 전원 공급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미 정수된 물탱크를 끼우는 방식은 냉온수기, 정수필터를 끼우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정수기다. “물은 인간이 평생 가장 많이, 자주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 문제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이 경쟁력이 있죠. 또 하나 관건은 에너지 절감입니다. 이 또한 저희만의 기술력이 있습니다.” 장석은 영원코퍼레이션 대표이사의 말이다.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직원 76명, 매출 210억 원(2012년) 규모의 이 회사는 현재 수출 비중이 100%다. 70%를 일본에, 20%를 유럽에, 10%를 미국으로 수출하며, 중남미와 중동에도 일부 수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출지가 위생과 안전에 철저한 선진국들로 ‘수질’ 문제에서만큼은 인정받은 셈이다.

#### 1995년 가전 트레이딩으로 시작

장 대표를 비롯한 회사 창립 멤버들은 국내 유명 대기업에서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을 수출하던 해외영업 출신이다. 1995년 설립 당시는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체로 출발했다. 처음에는 백색가전 외에도 밥솥, 정수기 등 다양하게 트레이딩을 했으며, 2000년부터 정수기 제조업에 뛰어들었다. 장 대표는 “물, 공기 를 다루는 업종이 유망할 것이라고 봤다. 또 마침 관련 엔지니어들도 주변에 있었다”고 업종

정수기 전문 제조업체인 영원코퍼레이션은 수출을 통해 쌓아온 내공을 바탕으로 내수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수출 비중 100%로 그간 글로벌 트렌드를 충실히 따라가고 있었는데, 한국 시장에 ‘탄산’이라는 새로운 유행이 온 것이다. 현재 탄산수 제조 냉온수기 및 정수기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업체는 이 회사뿐이다. 이처럼 수출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견인차가 되기도 한다.

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처음부터 내수보다는 수출을 위주로 했고, 그간 알고 지내던 바이어들을 통해 수출이 시작됐다. 사명은 특별한 의미를

두고 지은 것은 아니었다. 주변에서 얘기한 이름 중에 마음에 드는 ‘영원’을 선택했는데, 영어로 써 놓고 보니 유명 팝 가수 클리프 리처드의 ‘더 영 원(The Young Ones)’과 같았다. 이 노래는 이 회사의 비공식 사가처럼 되어 버렸다.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들은 바이어는 회사명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회사는 차곡차곡 성장했다. 2004년 남동공단으로 확장·이전한 데 이어, 2007년 지금의 공장을 매입해 ‘세입자 생활’을 끝냈다. 올해는 1층 라인 연장에 이어 2층에도 생산라인을 만들고 있다. 최근 생산라인을 확장한 데는 수출물량이 증가한 것 외에도 탄산정수기의 내수판매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국내 대기업이 탄산수 기능을 갖춘 고급 냉장고를 내놓으면서 국내 정수기 업체들은 부랴부랴 탄산정수기 제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냉장고에 사용된 탄산가스 실린더가 휴대용 부탄가스 크기라면, 정수기용은 가정용 LPG 용기라고 할 수 있다. 정수기용이 용량과 압력이 크고 용량 당 단가가 낮다. 영원코퍼레이션은 이미 2003년부터 헝가리·러시아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탄산정수기 모듈을 개발해 이를 장착한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다. 장 대표는 “그간 정수기는 내수시장에서 차별화가 힘든 분야였는데, 수출로 쌓은 기술로 이젠 도전해볼 만하다”고 포부를 밝혔다.

#### 한·EU FTA 발효 후 유럽 수출 증가세

영원코퍼레이션이 거래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일본·유럽·미국 등 선진국들로 기술인증이 까다로운 곳이다. ISO9001·미국 FDA·유럽 CE·일본 PSE·에너지스타 등 다양한 인증을 받은 경험은 한·EU FTA 활용에도 적용됐다.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전부터 바이어들의 문의가 늘어나자, 곧바로 준비해 2011년 8월 인천세관으로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당시, 영원코퍼레이션과 거래하고 있던 오메가관세사무소 및 인천세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HS코드 8418.69(필터를 장착하지 않은 냉수기)은 한·EU FTA를 통해 2.2%이던 수출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이다. 이후 필터 등 정수기 부품들에 대해서도 바이어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에 품목들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FTA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영업부의 김은경 과장은 “냉온수기, 정수기 완제품 수출이 메인이기 때문에 ‘품목별’ 인증서로 진행하였고, 요청에 따라 가능 부품들을 추가해 바이어들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활용 현황을 설명했다.

한·EU FTA 발효 이후 스페인에서 월 40피트 2컨테이너 분량의 신규 계약을 맺는 등 EU 수출액은 2011년 48만 달러에서 2012년 105만 달러, 2013년 160만 달러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10일 영원코퍼레이션은 ‘2013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해 우수상(10개 업체 수상)을 받았다.❶

## 세계적 IT·전자산업 강국의 효시

## 금성 라디오



한국 전자산업의 최초 수출품은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에서 만든 라디오다.

금성사의 라디오는 이 회사의 창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금성사의 창립 과정을 살펴보려면 5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57년 락희화학 사무실이 있었던 반도 호텔에서 있었던 구인회 회장(당시 사장)과 윤옥현 기획실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당시 윤 기획실장은 새로 구입한 전축에 푹 빠져있었다. 윤 실장으로부터 전축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구 회장이 '우리도 한 번 만들어 보자'고 했다. 구 회장은 일본 통상산업성이 발행한 '통산백서'에서 유망한 사업 분야로 석유화학공업과 전자공업을 꼽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구 회장은 "전축을 생산하려면 먼저 라디오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윤 기획실장의 말에 따라 라디오 사업 구상에 착수했다. 하지만 내부 반발이 거셌다. 상당한 개발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설사 만든다고 해도 최신형 미제 라디오와 도저히 경쟁

할 수도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부산 미군 하야리아 부대 피엑스에서만 한 달에 1만 5,000대의 라디오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또한 주력인 플라스틱 사업에서 적잖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 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도 있었다. 당시 락희화학은 국내에서 팔리던 플라스틱 제품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의 '돈 썩어내는 기계'로 불릴 정도로 플라스틱 부문이 번성하고 있지만 기술 수준이 낮은 만큼 곧 경쟁업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이미 갖고 있는 플라스틱 기술과 설비로 전자제품 외관을 만들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노려볼 만 했다.

구 회장은 선진국 전자 산업을 알아보기 위해 100일 간의 일정으로 홍콩·유럽·미국·일본 등을 둘러보고 귀국했다. 이를 계기로 전자산업의 미래를 확신한 구 회장은 사업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기계 도입을 위해 1차로 확보된 예산은 8만5,195달러. 새로 짓는 공장에서는 라디오·플라스틱·전자기기 등을 생산하기로 했다. 기술고문 및 생산 책임자는 한국에 들어와 있던 독일인 기술자 헨케에게 맡겼다. 그리고 1958년 10월 1일, 한국 최초의 전자 회사인 금성사가 탄생했다.

## 1958년 국내 최초 라디오 87대 생산

이후 금성사는 1958년 11월 제1호 국산 라디오를 생산해냈다. 모델명은 A-501로 전

기용 진공관 5구 라디오 제1호라는 뜻이었다. A-501에는 '골드스타'라는 상표가 부착돼 서울의 미도파백화점 쇼윈도에 전시됐다. 5가지의 다양한 컬러로 출시됐으며 첫 해 생산량은 87대였다. 가격은 약 2만 원으로 당시 금성사 대졸 신입사원의 3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미국 PX를 통해 시판되던 제니스 라디오에 비하면 20분의 1의 가격이었다. 샐시·트랜스·너트·코드 등 60% 이상의 부품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진공관과 스피커 등 일부 핵심 부품만 외국 것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일단 소매점 판로 자체가 뚫리지 않았다. 청계천 일대의 전파사들은 "국산 라디오를 어디 쓰겠느냐"며 외면했다. 사실 결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초기 제품들은 접촉 불량 탓에 소리가 끊기는 사례가 빈번했다. 국산 부품을 쓴 탓도 있지만, 당시 전력사정이 위낙 좋지 않아 100V 전압을 유지하기 힘들었고 방송국 사정도 열악해 서울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도 전파를 수신할 수 없었다. 헛별을 받으면 케이스 표면이 누렇게 변색되는 문제도 있었다.

제품을 생산해도 팔리지 않으니 재고가 쌓이는 것은 당연했다. 재고만큼 적자도 늘어나 1961년까지 금성사는 계속해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락희화학이 플라스틱으로 번 돈을 금성사가 다 깨먹는

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금성사 주변의 가게들이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른다며 금성사 사원에게 외상을 주지 않을 정도였다. 회사 내부에서는 다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사업 중단과 사업 계속의 갈림길에서 구 회장은 1년의 기한을 잡고 향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신제품 개발과 판매망을 확충하는데 열을 올렸다.

## 1962년 미국에 62대 라디오 최초 수출

기회는 찾아왔다. 1961년 9월, 고전하던 금성사에 박정희 당시 국기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방문했다. 부산 연지동 공장을 찾은 박 의장은 당시 라디오 설계 책임자였던 김 해수 과장에게 "어떻게 하면 한국의 전자 산업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김 과장은 "일제 밀수품과 미제 면세품의 유통을 막아야 전자산업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밀수품 근절에 관한 포고령'과 함께 '전국 농어촌에 라디오 보내기 운동'이 시작됐다. 효과가 나타났다. 재고품으로 쌓여 있던 금성사 라디오가 조금만 나가도 전파를 수신할 수 없었다. 금씩 시장에서 팔리기 시작했다. 판매 수익은 고스란히 기술 향상에 투자됐다. 목표는 외제에 버금가는 라디오였다.

이듬해인 1962년은 금성사에게 반전의 해였다. 연 1만 대에 못 미쳤던 라디오 판매량이 13만7,000대까지 늘어났다. 사업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락희화학이 플라스틱으로 번 돈을 금성사가 다 깨먹는



4교대 작업을 강행해야 했다.

금성사의 첫 수출이자, 한국 전자 산업의 첫 수출도 이 해에 달성됐다. 1962년 11월 28일 미국 뉴욕의 아이젠버그에 T-703 라디오 32대와 TP-603 라디오 30대 등 모두 62대, 594달러치를 수출한 것이다. 신문들은 이 소식을 금지막한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미약한 수준이나마 수출을 시작한 이후 점차 규모가 커졌다. 1964년, 도쿄에서 체결한 23만 달러짜리 계약은 그해 라디오 수출의 절반에 가까웠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자산업은 본격적인 수출시대를 펼쳐 나가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금성사는 1966년 8월 1일 한국 최초 텔레비전도 만들어냈다. 진공관식 19인치 1호 모델을 뜻하는 VD-1910이라 는 모델명의 이 텔레비전은 라디오를 처음 개발한지 7년 만에 만들어 낸 것이다. 빠른 개발의 배경에는 라디오 생산이라는 경험 이 있었다. 특히 초기 개발 때 국산 부품을 다수 개발해 둔 것이 후속 제품 개발을 수월하게 했다.

금성사의 라디오는 전자 정밀제품의 생산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전자공업 발전에 하나의 큰 기폭제가 됐으며, 현재 세계적 IT·전자 산업 강국으로 자리하는 기반이 됐다.❶



1959년 실린 금성사 A-501의 광고, '遂出現在(수출현: 마침내 나타나다)'이라는 한자가 이색적이다.

금성사는 1962년 1월 미국 아이젠버그사에 처음으로 62대의 라디오를 수출했다. 당시 부산 연지동 공장의 한 직원이 'Gold Star(골드스타)'라고 쓰여 있는 라디오상자에 기대 환하게 웃고 있다.



#1 지난 2월 13일, 방한 중이던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들렀다. 그가 이곳에서 맛 본 것은 '떡볶이'. 상인에게 "헬로"라는 인사말을 건넨 케리 장관은 방금 만들어진 떡볶이 접시를 받아들었다. 그가 주문한 것은 간장으로 맛을 내고 기름에 볶아낸 기름 떡볶이와 빨간 고추장 소스의 매운 떡볶이 6,000원어치. 입맛에 맞았는지 "베리 굿" "땡큐"를 연발하며 수행원들에게도 떡볶이를 권했다.

#2 중화권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홍콩의 미녀 스타 천후이린(陳慧琳)은 떡볶이를 보면 식욕을 감추지 못해 몸매 관리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고. 그는 영화 홍보차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는 시간이 난다면 무엇보다 떡볶이를 먹으러 가고 싶어요. (한국어로)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라고 말했다.

#3 2013년 미식프로축구 NFL 정규리그 시즌 개막 첫 홈경기가 열리던 휴스턴 릴라이언트스타디움. 휴스턴 지역 스타 세프인 크리스 세퍼드가 운영하는 언더밸리(underbelly)라는 주전부리 매점에 '브레이즈드 고트 앤드 라이스스틱'(braised goat & rice stick)이라는 메뉴가 등장했다. 줄인 염소고기와 함께 고추장을 듬뿍 집어넣은 한국식 떡볶이의 다른 이름이다. 세퍼드 씨는 "고추장 소스는 단맛도 나고 숙성된 맛도 있는데 이는 상당히 중독성이 강한 맛"이라며 "휴스턴 시내에서 운영하는 식당 테이블이 60개인데 매일 80인분의 떡볶이가 팔려나갈 정도"라고 전했다.

세계가 한국의 떡볶이 맛에 푹 빠졌다.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명동·강남 등지의 떡볶이 체인점에서 외국인 손님을 목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열렬한 입을 달래려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면서도 연신 "맛있다"를 외치는 이들의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움을 느낀다. 서울의 '신당동 떡볶이 거리'는 어떤가.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본고장의 떡볶이 맛을 보기 위해 일본·중국·대만 등 해외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있다.

해외에도 떡볶이 전문점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미국 LA, 일본 도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세계 각지에 매콤한 떡볶이의 맛이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한국을 찾은 한 일본 관광객은 "최근 일본에도 떡볶이가 많이 알려져 일본에서도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됐다"고 말했다. 그간 길거리 음식으로 어겨졌던 떡볶이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 짜장면에 빠뜨린 떡 하나가 떡볶이로

떡볶이는 본래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랐던 음식이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조선시대 초(1460년대)부터 존재한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다. 나물과 소고기, 떡을 넣고 간장으로 줄인 것이 궁중떡볶이의 당시 모습이었다. 간장 떡볶이가 현재 '궁중 떡볶이'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떡볶이의 대표 주자가 간장떡볶이에서 고추장떡볶이로 변한 시점은 1950년대 이후다. 고추장떡볶이는 2011년 작고한 고 마복림 할머니가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마복림 할머니는 십여 년 전의 어느 TV광고에서 떡볶이 고추장 제조의 비밀을 묻는 질문에 "며느리도 몰라"라고 말하며 일약 스타로 떠올랐던 바로 그 사람이다.

올 2월 13일 방한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한 떡볶이집을 방문해 주문한 음식의 조리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 떡볶이 최고 매력은 '다양성'

로컬 푸드였던 떡볶이가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은 한류 열풍이 시작되던 2000년대에 들어서다. 드라마와 가요에 끌려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들이 매콤 달콤 쫄깃한 떡볶이 맛을 본 뒤 자국으로 돌아가 입소문을 냈고 점차 유명세를 타게 된 것.

이에 대한 민관의 대응도 밟 빨랐다.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했고 정부는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의 반열에 올리겠다는 청사진 아래 떡볶이 알리기에 힘썼다. 2009년부터 5년 간 140억 원을 투입해 떡볶이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키로 했으

며, 영문 발음이 쉽도록 떡볶이의 영문 표기를 'topokki'로 일치시켰다.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 떡볶이페스티벌,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제 음식축제에 참가하고, 미국 존슨 앤 웨일즈 요리학교 떡볶이 설명회를 여는 등 다양한 해외 홍보행사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떡볶이의 성공 요인을 '다양성'에서 찾고 있다. 간장에서 고추장으로 변화했던 이력만큼 현재도 치킨, 치즈, 풍등 등 다양한 식재료와 요리들과의 만남을 통해 개발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떡볶이라는 단일 메뉴는 응용하기에 따라 수백, 수천 가지 종류가 될 수 있다. 이는 떡볶이의 가능성에 무한하다는 뜻이자, 세계인의 입맛을 더욱 사로잡을 수 있는 떡볶이의 매력이고 장점이다.❶

자유무역의 역사-③GATT의 성과와 WTO의 과제

## GATT, 20세기 자유무역의 토대를 완성하다

'세계무역기구(WTO)'라는 용어는 익숙해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이란 단어는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GATT는 WTO의 모체인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GATT 체제의 마지막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WTO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하에서는 GATT가 탄생하게 된 배경, GATT 체제에서 이룬 성과들, 그리고 GATT 체제를 이어 WTO 체제에서 수행해 나가야 하는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가장 큰 성과는 WTO를 설립키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세계 무역 규모와 회원국수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국제무역 규범을 체계적으로 관장해 나가기 위해 GATT를 보완하여 WTO라는 국제기구를 창설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 즈음, 전후 세계 경제질서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합국 45개 대표가 미국 뉴햄프셔주의 소도시 브레튼우즈에 모였다. 당시 연합국들은 전후 세계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고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 분야에서는 국제무역기구(ITO·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를 설립하고, 관세인 하에 관한 각종 규정을 만들기로 하였다. 즉,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지나치게 높아진 각국의 관세 수준을 낮추고, 관세 이외의 보호 수단을 제한하는 등 각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가지 제안 중 ITO 설립은 무산되었다. ITO 설립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나라는 미국이었는데, 미 의회의 비준 거부로 인해 없었던 일로 된 것이다.

### 01 GATT는 1948년 1월 발효된 국제협정

ITO 설립을 대신해 관세 인하나 무역에 관한 규정을 담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탄생하게 되었다.

GATT는 제네바 협상에 참가했던 23개국을 최초의 가입국으로 해 1948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엄밀하게 따지면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니라 하나의 국제 협정이다. 그러나 이후 관련 업무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GATT 체제 하에서 총 여덟 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이

이루어졌다. 제1차 협상은 앞에서 언급한 GATT 체제의 출범을 가져온 제네바 협상이다. GATT 체제 하에서 진행된 제1차부터 제5차 협상까지는 공산품 분야의 관세인하만 다뤄졌다. 제6차 협상인 케네디라운드에서는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반덤핑협정에 관한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다. 또한 제7차 도쿄라운드에서는 관세 이외의 무역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장벽들, 즉 비관세장벽의 문제를 처음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를 들면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제품의 표준에 관한 협정, 보조금에 관한 협정 등이 도쿄라운드에서 만들어졌다.

이후 제8차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세계 무역사의 획을 긋는 많은 성과가 도출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협상을 개시한 이후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무려 7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다. 참여국도 117개국이나 되었으며, 협상이 종반으로 치달을 즈음에는 참여국이 125개국으로 크게 확대됐다. 또한 과거의 협상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한 의제가 논의되었다.

우선, 농산물과 섬유 등 민감한 품목을 협상에 포함시켰다. 농업과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비교열위 산업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분야이다. 따라서 이들 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보호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이들 품목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자유화 대상에서도 많은 예외가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이러한 품목들을 GATT 체제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밖에도 당시 점차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장벽을 완화하는 협상을 진행했다. 이전 라운드에서 논의 되었던 반덤핑, 보조금 협정은 원래 일부 원하는 국가들만 참여하는 '복수국간 협정'이었는데, 이 협정들을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으로 전환했다.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적재산권보호조치에 관한 협정도 만들었으며 GATT 분쟁해결 규정도 강화했다.

### 02 우루과이 라운드, 7년 협상 끝에 WTO 출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키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세계 무역 규모와 회원국수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국제무역 규범을 체계적으로 관장해 나가기 위해 GATT를 보완하여 WTO라는 국제기구를 창설한 것이다. 이후 GATT 체제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협정들이 이행되면서 세계 무역은 크게 신장되었다.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던 개도국들의 관세도 UR 이후 상당히 인하되었으며, 비관세장벽도 상당부분 축소되었다.

GATT 체제의 팔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WTO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공산품 분야의 시장개방에 비해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은 진전이 덜 이뤄졌다. 또한 많은 회원국들의 공산품 분야 무역장벽도 여전

히 높게 유지되고 있고,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 지역무역협정 관련 규정, 분쟁해결절차 등도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 세계 무역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지적재산권 등 무역 관련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WTO 회원국들은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을 출범시켰다. 협상의 명칭에 기존 '라운드' 대신 '개발'이 붙은 것은 이전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경제개발 문제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DDA 협상은 출범 이후 12년이란 장기간 동안 난항을 겪으며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간신히 오랜 침묵을 깨고 약간의 진전을 보일 수 있었다.

당시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의제'와 '개발·최빈개도국' 등 3개 분야를 담은 '발리 패키지'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DDA의 포괄적인 의제에 비하면 타결된 내용은 협소하기 그지없다. 앞으로 WTO는 DDA 협상 출범 당시 야심차게 내걸었던 다양한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뤄나갈 때 세계 경제는 무역확대를 자양분으로 하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❶

GATT는 1986년부터 1994년에 걸쳐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에 합의했다. 사진은 1994년 4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GATT 각료회담에서 최종결정안에 서명하는 김철수 당시 상공부장관.

## 세계의 FTA-②ASEAN(아세안)

## 역내 경제통합, 국가별 단독 추진, RCEP... 전방위적 FTA 전략 추구

최근 ASEAN(아세안)이 우리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6%(2013년 기준)까지 늘어났다. 중국에 이어 2위 규모의 교역상대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ASEAN은 주요국가와 모두 FTA를 체결한데 이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ASEAN 전체 차원뿐만 아니라 ASEAN 개별 회원국 차원의 FTA도 활발하게 추진하는 상황이다.

## 경제협력 고도화하는 ASEAN 10개국

동남아의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본래 1967년 동남아의 안보 이슈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협력체이다. 당시에는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 5개국으로 구성되었고, 이후 브루나이(1984년), 베트남(1995년), 라오스·미얀마(1997년), 캄보디아

(1999년) 등이 가입하며 지금의 10개국까지 확대되었다.

ASEAN은 회원국 확대와 함께 정치·안보, 사회·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왔다. 특히, 경제 분야의 협력으로는 역내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ASEAN 자유 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를 추진해오고 있다. 1993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AFTA는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 등 ASEAN



주목할 것은 ASEAN이 지역을 둘러싼 주변 주요국과의 FTA를 모두 발효하게 된 점이다. ASEAN은 이러한 FTA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 ASEAN을 구심점으로 하는 경제통합을 구상하고 있다.

에 먼저 참가한 선발 6개국이 2010년까지, 이후에 참여한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등 후발 4개국은 2015년까지 상품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AFTA를 통한 ASEAN의 역내 무역 자유화 방식은 EU, 중동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와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EU와 GCC가 대외적으로 공동 관세를 책정하고 동시에 역내 관세를 철폐하는 것과 달리 ASEAN은 회원 각국의 관세제도는 유지하면서 역내 관세 인하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EU로 수출할 때와 달리 ASEAN으로 수출할 경우에 각국별로 다른 관세를 적용받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이 같은 ASEAN의 역내 관세 인하와 무역 자유화 방식은 점진적이지만 일정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ASEAN 선발 6개국의 경우 AFTA가 적용되기 시작한 1993년 평균 관세 12.76%를 1.51%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나아가 ASEAN은 무역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는 비관세 장벽 축소를 위해 노력중이다. 또한 EU와 같은 단일시장 형태의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설립을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동아시아 FTA를 하나로 묶어 경제통합 논의 주도**  
ASEAN은 이 같은 역내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FTA 추진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2005년 중국과의 FTA를 시작으로 한국(2007년), 일본(2008년), 인도(2010년), 호주·뉴질랜드(2010년)까지 총 5건의 FTA를 발효하게 된다. 주목할 것은 ASEAN이 지역을 둘러싼 주변 주요국과의 FTA를 모두 발효하게 된 점이다. ASEAN은 이러한 FTA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 ASEAN을 구심점으로 하는 경제통합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RCEP에는 ASEAN의 FTA 파트너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현재의 RCEP 협상을 ASEAN·한국, ASEAN·일본, ASEAN·중국,

ASEAN·인도, ASEAN·호주·뉴질랜드 FTA를 하나의 FTA로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이러한 RCEP 협상에 대해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등은 다소 상이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RCEP를 통해 자국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도모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폭넓고 수준 높은 자유화를 목표로 한다. 이와 달리 ASEAN은 RCEP을 ASEAN 중심(ASEAN Centrality)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 중이다. ASEAN의 경제 개발이 RCEP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경제·기술협력을 통한 ASEAN의 혜택, 형평성 있는 경제발전,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등 ASEAN의 후발 4개국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ASEAN 개별국 차원의 FTA 추진도 활발

ASEAN이 주변 국가와의 FTA를 일단락한 이후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은 그동안 전체 차원의 FTA에 주력해왔던 ASEAN 각국들이 개별적인 FTA 추진에 활발하게 나서는 점이다. 과거부터 FTA에 적극적이었던 싱가포르의 경우 최근 GCC, 코스타리카와의 FTA를 발효하고 ASEAN 국가 최초로 EU와 가서명했으며 대만과도 공식서명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EFTA, 한국, 호주 등과 양자협상을 진행 중이고, 태국은 칠레와 서명, EU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말레이시아는 칠레, 호주와 FTA를 발효하고 터키, EU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베트남은 특히 활발해 최근 칠레와의 FTA를 발효했고, 한국, EU, EFTA,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ASEAN 회원국의 개별적인 FTA 추진에서 눈에 띄는 점 가운데 하나가 일부 회원국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참가다. 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 4개국은 ASEAN 회원국으로서 RCEP 협상에 참가하는 것과 동시에 TPP 협상에도 참가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 등은 RCEP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아시아 역내경제통합의 두 가지 조류에 ASEAN 각국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지는 주의 깊게 지켜볼 대목이다.❷

## 원산지 판정을 위한 BOM 및 제조원가계산서

실무에서 '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BOM(비오엠)이란 'Bill Of Material'의 약자로,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자료 또는 부분품에 대한 상세내역을 의미한다. 즉, 어떤 물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 어떠한 부분품들이 몇 개씩 소요되고 조립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주요 부분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품들이 어떻게 모여 최종 완제품을 구성하게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소요자재명세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BOM은 업체에 따라 개발BOM, 생산BOM 등 다양한 형태의 BOM이 존재한다.

FTA 원산지 판정을 위한 BOM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원자료 내역, 투입 수량 등 기존 BOM에서 관리되는 기본적인 정보 이외에 원자료의 △HS코드 △원산지정보 △각 원자료별 가격 등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물품에 대해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돼 원산지 판정이 이뤄지는 경우 BOM(비오엠) 이외의 원가 산출 내역의 작성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지만,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거나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모두의 총족을 요구하는 조합기준인 경우, 그리고 세번변경기준에 미소기준이 보

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조원가계산서가 반드시 필 요하다.

제조원가계산서는 BOM과 더불어 원산지 판정에 기본이 되는 서류로, 보통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 경비, 판매비와 관리비, 이윤, 국내운송비로 구성된다.

원산지판정을 위한 BOM 및 제조계산서 작성은 원자료와 생산정보와 생산정보 준비는 FTA 담당 부서 인력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다. 각각의 정보를 취급·관리하는 부서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회사전체 구성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FTA 성격에 부합하도록 해당 정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원산지 판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BOM 및 제조원가계산서는 원산지 판정에 기초가 되는 중요서류이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자재명세서(BOM) 및 제조원가계산서(예시)

BOM 및 제조원가계산서																																																																																								
□ 원제품 명칭/규격 : Spark Plug(DPPC-1) HS Code : 8331.10 □ 적용범위·한·중도 CTPA □ 출판자·발행기준 : CTPA + RIC40% □ 적용자/당첨부수 : 000 대(2013년 10월 1일) □ 적용일자 : 2014년 2월 14일																																																																																								
작품 판권 (G004-12) USD 1,100.00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명/규격 (제품명)</th><th>세관번호 (HS No.)</th><th>원산지</th><th>스토랑 (PCN/g)</th><th>단가 (원/㎏)</th><th>가격 (원)</th><th>구입비</th><th>공급자 (별도로 정한자)</th><th>접종서류</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Ceramic Insulation</td><td>8547.30</td><td>한국</td><td>1</td><td>4,000</td><td>4,000</td><td>20.7%</td><td>서울을증정 원산지(제공자 국내판매자)</td><td>02-800-4947 02-800-9511</td><td>000 관리 000 서명</td></tr> <tr> <td>Ceramic Spark plug Bodies</td><td>8547.30</td><td>일본</td><td>1</td><td>1,000</td><td>1,000</td><td>22.1%</td><td>도쿄본사(제 공자)</td><td></td><td></td></tr> <tr> <td>Carpet</td><td>8494.30</td><td>베트남</td><td>2</td><td>1,000</td><td>2,000</td><td>18.7%</td><td>Ha noi Branch 수입신고업체</td><td></td><td></td></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td><td></td><td></td><td></td><td>총상자(제공자/제작자)</td><td>4,000</td><td>33%</td><td></td><td></td><td></td></tr> <tr> <td></td><td></td><td></td><td></td><td>부품원자재(제조자)</td><td>9,000</td><td>82%</td><td></td><td></td><td></td></tr> <tr> <td></td><td></td><td></td><td></td><td>총계</td><td>13,000</td><td>100%</td><td></td><td></td><td></td></tr> </tbody> </table>									품명/규격 (제품명)	세관번호 (HS No.)	원산지	스토랑 (PCN/g)	단가 (원/㎏)	가격 (원)	구입비	공급자 (별도로 정한자)	접종서류	비고	Ceramic Insulation	8547.30	한국	1	4,000	4,000	20.7%	서울을증정 원산지(제공자 국내판매자)	02-800-4947 02-800-9511	000 관리 000 서명	Ceramic Spark plug Bodies	8547.30	일본	1	1,000	1,000	22.1%	도쿄본사(제 공자)			Carpet	8494.30	베트남	2	1,000	2,000	18.7%	Ha noi Branch 수입신고업체																	총상자(제공자/제작자)	4,000	33%								부품원자재(제조자)	9,000	82%								총계	13,000	100%			
품명/규격 (제품명)	세관번호 (HS No.)	원산지	스토랑 (PCN/g)	단가 (원/㎏)	가격 (원)	구입비	공급자 (별도로 정한자)	접종서류	비고																																																																															
Ceramic Insulation	8547.30	한국	1	4,000	4,000	20.7%	서울을증정 원산지(제공자 국내판매자)	02-800-4947 02-800-9511	000 관리 000 서명																																																																															
Ceramic Spark plug Bodies	8547.30	일본	1	1,000	1,000	22.1%	도쿄본사(제 공자)																																																																																	
Carpet	8494.30	베트남	2	1,000	2,000	18.7%	Ha noi Branch 수입신고업체																																																																																	
				총상자(제공자/제작자)	4,000	33%																																																																																		
				부품원자재(제조자)	9,000	82%																																																																																		
				총계	13,000	100%																																																																																		
제조원가 계산서																																																																																								
<table border="1"> <thead> <tr> <th>직접자재비</th><th>직접노무비</th><th>직접경비</th><th>제조간접비</th><th>제조원가</th><th>기타/관세/국내운송비</th><th>판매가격</th><th>부가가치 비율</th></tr> <tr> <th>액내</th><th>액외</th><th>(원)</th><th>(원)</th><th>(원)</th><th>(원)</th><th>(원)</th><th></th></tr> </thead> <tbody> <tr> <td>4,000</td><td>9,500</td><td>2,300</td><td>1,300</td><td>20,900</td><td>2,000</td><td>22,900</td><td>68.3%</td></tr> <tr> <td colspan="8">FOB-비원산지제조 가격(FOB-188)</td></tr> </tbody> </table>									직접자재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제조간접비	제조원가	기타/관세/국내운송비	판매가격	부가가치 비율	액내	액외	(원)	(원)	(원)	(원)	(원)		4,000	9,500	2,300	1,300	20,900	2,000	22,900	68.3%	FOB-비원산지제조 가격(FOB-188)																																																							
직접자재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제조간접비	제조원가	기타/관세/국내운송비	판매가격	부가가치 비율																																																																																	
액내	액외	(원)	(원)	(원)	(원)	(원)																																																																																		
4,000	9,500	2,300	1,300	20,900	2,000	22,900	68.3%																																																																																	
FOB-비원산지제조 가격(FOB-188)																																																																																								

## 원산지관리 실무-②자재명세서(BOM) 및 제조원가계산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때마다  
새로 작성, 5년 간 의무 보관...

최근 FTA와 관련해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자재명세서(BOM)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의 BOM 관리현황을 보면 BOM을 마련조차 하지 않은 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마련된 BOM 역시 FTA의 관점에서 보면 미비한 점이 많은 편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FTA 활용에 불필요한 정보를 너무 많이 담고 있기도 하다. FTA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관리표준으로서의 BOM 및 제조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보자.



## BOM 및 제조원가계산서 작성방법

BOM 및 제조원가계산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매 건마다 새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동일한 HS코드로 분류된 수출물품이라 하더라도 모델, 규격이 다른 경우 해당 물품에 사용된 원자료, 단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BOM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출물품 모델마다 각각 작성되어야 한다.

BOM은 업체 내에서 작성된 구매원장과 원자료수불부를 근거자료로 하여 작성되며,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실제 구입하였거나 수입한 모든 원자료가 기재되어야 한다. 물품의 제조 시 특정 부품을 자체 생산하여 결합하는 중간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한, 특정 부품의 생산에 투입된 구입 및 수입한 모든 원자료 또한 같이 기재되어야 한다.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대부분의 협정에서 소매용 포장용 품 등은 고려하지 않으나,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에는 BOM 상에 포장재, 액세서리, 부속품도 함께 기재하여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운송용 포장용품은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제조원가계산서 부분의 각 항목은 기업의 각 분기별 또는 회계기간별로 작성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의 각 감사내용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각 항목에 대한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서로 상이한 경우 BOM 및 제조원가계산서는 물품의 생산자가 작성하여 원산지를 판정하고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출자에게 발행하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원산지 판정을 위한 BOM 및 제조원가계산서 양식은 일반적으로 위의 예시와 같다. 다만,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기본항목 이외의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품명 및 규격은 거래된 원자료의 일반적인 상품명 및 품번 등 상세내역을 작성한다. 유의할 점은 원자료 거래 시 발행된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에 언급된 거래물품의 명칭과 BOM 상의 상품명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품번은 일반적으로 업체 내에서 당해 원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된 코드번호로, 별도의 코드번호 등이 없는 경우 업체에서 원자료 관리가 용이하도록 품번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작성하면 된다. BOM 상의 소요량은 작성 대상인 수출물품 1단위 생산에 소요된 수량을 기재하면 된다.

BOM 작성 시 각 원자료별로 원산지를 판정하는데 원자료의 원산지는 납품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한국산(KR) 또는 역내산으로 취급하여야 그 이외의 모든 경우는 미상 또는 역외산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이 FTA 체결대상국이고 이와 동일한 국가로부터 수입한 원자료로서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 경우 누적기준을 적용하여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❶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③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

## 구체적 효능 표시하면 '일반의약품', 원료의 효용만 표시하면 '건강기능식품'



최근 건강한 삶을 누리자는 웰빙 및 헬스 열풍이 지속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념은 모호하기만 하다. 유사해 보이는 제품임에도 어떤 것은 일반식품이고, 어떤 것은 건강기능식품이고 또 어떤 것은 일반의약품인 것이다. 사실 일반인들이 쉽게 그 차이를 인식하기 어려운데, HS 품목분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품목분류**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은 말 그대로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목적으로 만든 게 일반 의약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를 함유하여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의 개념이다.

HS 품목분류 기준 역시 이러한 개념과 유

사하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HS 2106.90호에, 소매 의약품은 HS 3004호에 비교적 명확하게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과대광고에 현혹돼 우편물 및 특송화물로 과다하게 수입하거나 해외여행 시 “본인이 복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약품은 휴대품으로 반입이 가능하다”는 일부 의약품류 판매자 및 여행사 안내원들의 말을 믿고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을 반입하는 개인의 경우 이에 관련한 문의가 많다.

자기 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이 총 6병 이하이고 과세가격(물품가격+운송비+보험료)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맥락에서 관세 등이 면제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과세가격)에 대해 HS 2106호와 HS 3004호에 적용되는 FTA 세율이 달라지게 된다.(예: 한·미 FTA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은 3.2%, 의약품은 0% 적용)

또한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정식으로 수입되는 HS 2106호에 분류되는 건강기능식품과 HS 3004호에 분류되는 의약품에 대한 사전허가, 표준통관예정보고 등 통관관련 절차 역시 것이 아니라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를 함유하여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의 개념이다.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이 어떻게 품목분류 되고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실제 수출입 되는 몇 가지 물품을 통해 검토해 보자.

### 종합비타민!

건강기능식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비타민 제품일 것이다. 대부분 이러한 비타민 제품의 구성성분은 비타민 혼합분말, 포도당시럽, 설탕, 젤라틴, 구연산, 미량의 채소분말 향 등을 혼합·조제하여 일정 형태로 만든 것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 한 물품이다.

HS 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이 호에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이 포함된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일반적인 건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으나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 조제품은 포함되지 않고 HS 3004호 등에 분류된다.

소매 의약품이 분류되는 HS 3004호에서도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타민류나 무기염을 함유하고 있는 식이보조제는 포장에 일반적인 건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고 특정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된다는 표시가 없는 경우 HS 2106호나 HS 22류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음료로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22류의 음료와도 구별된다.

가령 비타민C 제품을 놓고 비교하면 HS 3004.50호의 일반의약품은 ‘육체 피로 회복’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HS 2106.90호에

분류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없다. 대신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 등 기능성 원료의 효용과 관련한 내용만 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보다 비타민의 함량이 적은 경우가 많으나, 같은 양의 비타민이 들어있어도 경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도 있고 의약품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서 라벨에 비타민 제품이 어떤 질병에 대하여 진단용, 치료용, 예방용으로 의도되지 않았다면 이 물품의 품목분류는 HS 2106.90호가 된다.

### 오메가3

멀티비타민과 함께 두 번째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오메가3 제품일 것이다. 이 제품은 연어, 참치, 멸치, 정어리 등에서 DHA, EPA 등을 함유한 오일을 추출하고 여기에 비타민A, 지방산, 에스테르, 루테인 등의 성분을 혼합·조제하여 이를 젤라틴 캡슐에 충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혈중 층성지질개선’ 및 ‘혈행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역시 HS 2106.90호에 분류될 수 있다.

### 홍삼엑시스

마지막으로 비타민, 오메가3와 함께 높은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

어 수출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홍삼제품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홍삼 제품은 홍삼주출물 농축분말을 주원료로 하고 효모주출물, 비타민C 등을 혼합하여 비피더스균으로 발효시킨 발효홍삼액 농축물을 혼합·조제한 흑갈색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이 역시 건강기능식품으로서 HS 2106.90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홍삼에 구기자, 계피, 홍화 등 각종 한약재를 혼합하여 환제로 만들어 소매포장한 것으로 의약적인 효능 및 효과가 표기되어 있는 인삼제제는 HS 3004.90호에 분류된다.

### 해외여행 뒤 6병, 15만원 이하 관세 면제

따라서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이 분류되는 HS 2106.90호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결정 기준을 살펴보면 다른 류의 물품에서 이 류(HS 21류)로 변경된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품목분류가 HS 21류 이외의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면 한국산 또는 미국산 원산지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HS 2106.90호에 분류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반드시 그러한 것이 아니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실 또는 채소의 농축쥬스, 알콜성 합성조제품, 당시럽, 초유 등 우유조제품, 과실의 중량이 20%를 초과 함유하는 과실 조제품, 인삼조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산지 판정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EU FTA 역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경우 원산지 인정이 되지만 제품에 따라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산지 판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 등 FTA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가진 HS 2106.90호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일반의약품이 분류되는 HS 3004호의 경우에는 한·미 FTA와 한·EU FTA 모두 다른 호에 분류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한·EU FTA: HS 3003호는 제외)받을 수 있다.❶



홍삼엑시스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HS 2106.90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구기자, 계피, 홍화 등 각종 한약재를 혼합하여 환제로 만들어 의약적인 효능 및 효과가 표기되어 있는 인삼제제는 HS 3004.90호에 분류된다.



사후검증 따라잡기-③정보제공요청서 대응 |

## 수입자·수출자 상호 협력이 중요... 영어로 작성해야

CBP Form 28은 한·미 FTA 사후검증 시  
최초로 받게 되는 서류로, '정보제공요청서  
(Request of Information)'라고도 한다.  
미국 세관(CBP·Customs & Border Protection)은  
제공받은 정보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정보를 요청하며, 이 때에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직접검증에 나서게 된다. 따라서  
CBP Form 28에 대한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

### 수입자와 수출자의 협력

CBP Form 28은 미국 관세당국에서 미국 내의 수입자에게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Form 28 상의 자료를 수출자  
가 모두 준비할 수는 없다. 수입자가 Form 28을 검토 후, 필  
요한 자료에 대해서만 별도로 수출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입자도 원산지 검증이 처음이라 관련 자료의 준  
비를 수출자에게 모두 맡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명 자료  
를 준비함에 있어 양자간 협의가 필요하다.

### 일반적인 요청사항

CBP Form 28에서 검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14. CBP Officer Message' 부분이다. 검증담당자가 해당

수입(entry)건과 관련하여 원하는 내용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는 부분인데, 그 분량이 길기 때문에 보통 별지에 기  
재하여 통보하며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물품에 관련된 사항** Entry summary에 기재된 품목에 대  
하여 해당 품목의 기능·용도·구성 등 수입품의 기본 정보  
에 대해 문의한다. 이는 정확한 품목분류 및 원자료의 구성  
확인을 통해 제출된 소명 서류와 제품 간 일치성을 확인하  
고자 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법적 근거** 한·미 FTA 협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특혜  
관세가 적용된 품목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 위해 정보  
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에 'UKFTA',  
'Verification' 등의 표현을 통해 수출물품에 대한 협정에 따  
른 원산지 검증관련 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요청자료** 품목, 산업, 제품 및 미국에서의 수입통관 당시  
의 이슈사항 등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표현 방식은 차이  
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요구하는 소명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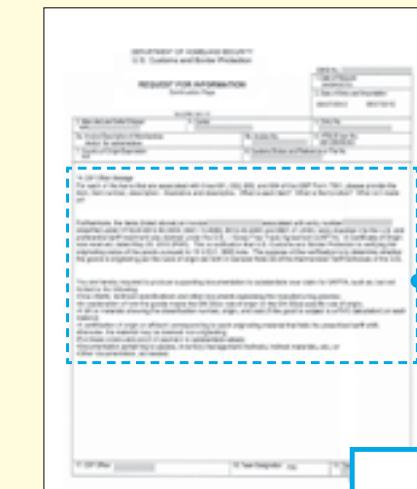
**① Flow chart,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other documents explain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생산라인 등을 통하여 제품이 생  
산되는 흐름에 대한 자료를 말한다. 제품을 생산하는 순서  
에 따라 주요 공정 명칭과 해당 공정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공정이 진행되는 사진 등을 통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An explanation of how the goods meets the GN33(b) rule of origin or the GN33(o) specific rule of origin.**

해당 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에 대  
하여 설명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관세율표에  
'일반주해(GN·General Note)'를 두어 자국이 체결한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  
미 FTA는 'General Note 33'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중 GN33(b)는 '협정문 제6.1조'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CBP Form 28 실제 사례



14. CBP Officer Message

For each of the items that are associated with lines 001, 002, 003, and 004 of the CBP Form T501, please provide the item, item number, description - illustrative and descriptive. What is each item? What is it made of?

(1) 물품에 관련된 사항 —

Furthermore, the items (listed above) on invoice associated with entry number classified under HTSUS 8512.90.9000; 8501.10.4000; 8512.40.4000 and 8501.31.2000, were imported into the U.S. and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as claimed under the U.S. - Korea Free Trade Agreement (UKFTA). A Certificate of Origin was received, dated May 23, 2012 (PSR). This is notification that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s verify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goods pursuant to 19 U.S.C. 3805 note. The purpose of the verification is to determine whether the goods is originating per the rules of origin set forth in General Note 33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

(2) 법적 근거 —

You are hereby required to produce supporting documentation to substantiate your claim for UKFTA, such as,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 ① Flow charts,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other documents explain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 ② An explanation of how the goods meets the GN 33(b) rule of origin or the GN 33(o) specific rule of origin;
- ③ A bill of materials showing the classification number, origin, and cost (if the good is subject to a FVC calculation) or each material;
- ④ A certification of origin or affidavit corresponding to each originating material that fails the prescribed tariff shift; otherwise, the material may be deemed non-originating;
- ⑤ Purchase orders and proof of payment to substantiate values;
- ⑥ Documentation pertaining to assets, inventory management methods, indirect materials, etc.; or
- ⑦ Other documentation, as needed.

GN33(o)는 '협정문 부속서 6-A(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품의 품목분류, 품목분류 근거, 원  
산지 결정기준, 판정에 사용된 결정기준 및 해당 결정기준  
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BOM(Bill of materials)**

원자료명세서를 말한다. 다만, 각 원자료의 '원산지(origin)',  
'세번(classification number)' 및 단가(Cost) 정보가 기재되  
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단가정보는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하  
여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 원산지확인서(affidavit)**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원자료에 대해, 해당 품목이 원산지  
재료임을 확인하는 자료를 말한다. 우리나라 FTA특례법에  
서 규정된 '원산지(포괄)확인서'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출되지 않은 원자료에 대해서는 역외산 재료로 간주된다.

**⑤ 구매주문서 및 지불 증빙자료**

해당 수입품에 대한 구매주문서 및 구매영수증, 입금확인

증 등 지불 증빙자료를 말한다. 수입자가 준비하여야 할 자  
료 중 하나이다.

**⑥ 보충적 기준에 대한 설명 및 기타 자료**

재고관리기법, 간접재료 등이 원산지 판정에 사용되었다면  
해당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만약 해당사항이 없  
다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  
방하다.

또한 위에서 요청한 자료 외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  
가 있다면 이들에 대하여 구비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판정 및 소명과 관련된 자료는 정보제공요청서에  
기재된 자료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요청되는 자료들은  
작성을 위해 별도로 제시되는 서식 등이 없으므로 수출자  
가 해당 사항에 적합하도록 자료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모  
든 자료는 영어로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한다. 몇몇 요청서  
에는 Officer Message 안에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리'라  
는 요청이 문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❸

## 첫사랑의 시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는 열두 살이었는데요.

우리 이쁜 여선생님을

너무나 좋아해세요.

손톱도 그분 같이 늘 깨끗이 깎고,

공부도 첫째를 노려서 하고,

그러면서 산에 가선 산돌을 죽어다가

국화밭에 놓아두곤

날마다 물을 주어 길렀어요.

서정주

산돌에 물 주어  
가르는 마음

미당 서정주 시인이 살아 계실 때 서울 관악구 남현동 자택으로 찾아가 뵙곤 했다. 지금은 문화공간으로 일반에 개방되어 '미당 서정주의 집'이라는 문패를 달고 있지만, 생전에 그는 이 집을 '봉산산방(蓬蒜山房)'이라고 불렀다.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웅녀가 됐다는 단군신화에서 따온 이름이다. 한국 신화의 원형이 시작된 곳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집 정원 한 쪐에 작은 쉼터가 있다. 일반인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단장하면서 새로 만든 것이다. 방문객들이 앉아 쉬거나 간혹 시낭송회를 여는 공간인데, 얼마 전 찾아갔을 때 여학생들이 응기종기 모여 미당의 시를 낭송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나도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미당의 '첫사랑의 시'를 읊조려 보았는데 어릴 적 이쁜 여선생님을 좋아하던 열두 살 소년 시절로 금방 돌아간 듯했다.

좋아하면 닮고 싶어진다고 했던가. 땃국 꾀죄죄한 시골 촌놈의 눈에 여선생님의 연분홍 손톱은 얼마나 맑고 고왔을까. 부드러운 눈빛과 목소리는 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런 여선생님을 닮고 싶었을 것이다. 잘 보이고 싶어서 공부도 1등을 노려서 더 열심히 하고, 손짓 발짓 온갖 매무새도 더 칙하게 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열두 살짜리의 생각이라 납득이 간다. 그런데 그 다음 생각은 어떻게 했을까. 혼자 산에 가서는 속마음과 닮은 돌을 하나 주워 와서 국화밭에 놓아두고 물을 주다니. 그렇게 물을 주어 기르는 생각을 했다니! 날마다 물을 주어 기르면 산돌이 자랄 거라고 믿는 그 마음이 정말 이쁘고 사랑스럽다.



1997년 생전의 서정주 시인과 고두현 시인.



그렇게 믿는 마음이 곧 사랑이다. 그게 첫사랑의 마음이고 첫사랑의 시다. 그리고 보니 시인의 첫사랑은 열두 살 때나 어른 때나 비슷했던 것 같다. 미당은 1970년 공덕동에서 이곳 남현동으로 이주한 뒤 '없는 살림에 마누라와 실랑이까지 해가면서' 30년 간 돌과 나무를 사들이며 정성껏 정원을 가꿨다. 그 속에는 어린 시절 남 물래 주워 와서 물을 주어 길렀던 산돌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손님들이 멀리서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정표 삼아 대문 앞에 소나무를 한 그루 심어놓고는 "소나무, 한국을 대표하는 나무제"라며 아꼈다. 채 8만 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나무 하나, 돌 하나씩 정성스레 들여놓고 모양과 빛깔을 대조하며 조화롭게 배치하느라 애를 썼다. 그 덕분에 정원엔 돌과 꽃, 대나무와 감나무, 철쭉 등이 철마다 생기를 뿐었다.

그는 "소나무, 모과나무, 살구와 감과 대추나무, 각종 철쭉꽃과 풀꽃, 봇꽃과 상사초 등 눈에 띠는 대로 사들여 와서는 강과 산에서 캐 온 바위들과 되도록 잘 어울리게 이것들의 구성에 '남는 시간을 다 썼다"고 했다. 그 몇 해 동안의 몰입이 사상을 구성하는 데에도 은연중 작용했노라고 훗날 고백하기도 했다.

그에겐 '첫사랑의 시'를 비롯한 모든 문학이 돌과 꽃과 나무에서 출발했고, 이것이 나중엔 바위와 정원과 산으로 크게 자랐던 것이다. 그는 일흔 살 이후부터 날마다 마당을 거닐며 전 세계의 산 1625개 이름을 높이 순으로 외워 읊었다. "왜 하필 산 이름을 외우십니까"하고 물으면 "온갖 산을 돌아댕기면서 산신령을 만나고 오제"라며 웃어젖혔다. 기억력을 잃지 않으려고 시작했다가 가락에 실어 노래하다 보니 색다른 맛이 나더라는 얘기도 덧붙였다.

나중엔 산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쓴 시로 시집까지 냈다. 시집을 낸 뒤에도 '그 누군가/ 흰 머리로 신선 되시어/ 영원한 새 청춘으로/ 하늘을 맡아 일어서시니…'라고 읊으며 변함없는 기억력을 자랑했다.

평소 맥주를 밥보다 더 즐겼던 그가 맥주잔을 들고 건배사를 외치듯 시를 줄줄 외워대던 장면 또한 눈에 선하다. 그의 맥주 사랑은 유별났다. 누가 찾아올 때도 늘 맥주를 사 갖고 오는 걸 제일로 반가워했다. 며느리가 건강을 걱정해서 가끔 무알콜 맥주로 바꿔치기할 정도였다. 2001년 10월 10일 부인 방옥숙 여사가 세상을 뜯 뒤에는 아예 곡기를 끊고 맥주로 연명하다시피 했다. 그로부터 두 달 보름만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영원한 피안의 나라로 떠날 때까지도 그랬다.

돌아가시기 3년 전인 1997년 여름에 미당과 함께 그 정원에서 찍은 사진을 찾아보니, 옥양목 한복 차림의 흰 고무신 발치께에 몇몇 산돌과 상사화 잎이 보인다. 그 때 내 수첩에 떨리는 손으로 비둘비둘 친필 휘호를 써 주고는 "하, 손이 떨리는 걸 본께 맥주가 모자란 모양인디…"라며 농담하던 모습도 아련하다.

저 세상에서도 그 장난스런 표정은 여전할까. 이쁜 선생님을 너무나 좋아해서 산돌을 주워다가 국화밭에 놓아두고 날마다 물을 주며 여태껏 기르고 있을까. 아, 하늘 땅 오르내리며 지금까지 번져가는 저 풋풋한 첫 사랑의 시여, 향기여! ☺



고두현 시인은요.  
199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시집으로  
'늦게 온 소포' 를 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 등이 있다.  
제10회 시와 시학 젊은 시인상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 연극이라는 산에 도전하다

‘맥베스’ 주연배우 김소희

배우 김소희(45)는 ‘연극에 미쳐 사는 사람’이다. 그의 삶은 모두 연극으로 채워져 있다. 대학교 때부터 줄곧 연극과 함께 살았고, 졸업 이후에는 극단 연희단거리패의 배우들과 함께 먹고 자며 연극을 했다. 국립극단 제작 ‘맥베스’ 공연을 앞둔 3월 5일 배우 김소희를 ‘함께하는 FTA’ 애독자 대학생 김지나 씨(25·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가 대학로 게릴라극장에서 만났다.



김지나 선생님, 실제로 보니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텐്ത한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김소희 반가워요. 그렇게 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목소리를 많이 내서 칼로리 소모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배우로서 공연과

연습은 기본이고, 강의도 해야 하고, 지금은 연희단거리패 대표도 맡고 있어서 사무적인 전화도 많이 하고요.

김지나 바쁜 시간에 인터뷰에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긴(게릴라극장) 어떤 곳인가요?

김소희 게릴라극장은 연희단거리패가 언제든 공연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곳이죠. 대학로 소극장 중에서는 크기나 객석의 배치가 좋아서 인기 있는 극장입니다. 연극평론가들은 이곳에서 하는 연극은 꼭 볼 정도로 수준 높은 작품이 많이 공연됩니다.

김지나 수준 높은 작품을 공연하는 비결이 뭔가요?

김소희 연희단거리패는 저처럼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 80명이 밀양연극촌과 서울 속소(수유리)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연극 연습만 해요. 연습량도 많고 호흡도 잘 맞으니 그런 것 아닐까요.

김지나 선생님은 처음 연극의 어떤 매력에 끌려 배우가 되셨나요?

김소희 대학생 때 연극동아리(연세대학교 극예술연구회)에 들었는데, 학생 때는 연기가 좋았지만 꼭 배우를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국문과를 나왔고, 짧은 시구를 잘 쓰다 보

니 카피라이터로 취업까지 알아보던 중 동아리 선배의 요청으로 작품을 하나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전까진 제가 ‘연기를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작품을 계기로 ‘내가 못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연기에 있어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게 된 거죠. 도전 의식이 생겼어요.

김지나 미지의 세계? 어떤 세계인가요?

김소희 그 전까지 저는 웃고 우는 감정 몰입을 빨리, 잘 하는 편이라 연기를 잘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구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닌 새로운 미지

의 영역 같은 거죠. 산악인이 히말라야를 오르는 이유와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에 오른다고 뭐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올라가지 않고는 못 배기는 마력을 가졌잖아요.

김지나 그 때부터 계속 연극을 하신 건가요?

김소희 취업 대신 동국대 연극영화과 대학원을 갔어요. 3학기 때(1994년) 연희단거리패를 만드신 이윤택 선생님이 ‘우리극연구소’를 모집한다길래 1기로 들어가면서 연희단거리패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2008년부터 연희단거리패의 대표를 맡고 있다.)

김지나 그간 하신 작품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김소희 너무 많아서. 뭐가 있지? ‘햄릿’ ‘원전 유서’ ‘오구’ ‘어머니’ 등등.

김지나 햄릿에서는 오플리어(햄릿의 연인) 역이었겠네요?

김소희 오플리어도 하고, 거트루드(햄릿의 엄마)도 하구요.

김지나 연희단거리패 작품만 줄곧 하셨나요?

김소희 외부 작품을 처음 한 게 2006년부터였어요. 한태숙 선생님이 연출한 ‘이아고와 오셀로’에서 오셀로의 부인(데스데모나) 역이었죠.

김지나 지금 공연을 앞둔 ‘맥베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김소희 맥베스는 권력욕 때문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지만, 죄책감으로 불행한 삶을

살다가 배신을 당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맡은 역은 맥베스의 부인 역인데, 왕을 죽이는 일을 공모하고 역시 죄책감 속에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저는 이 작품이 인천 모자살인 사건(부부가 공모해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용의자인 아내는 자살한 사건)이 생각나요. 길게 생각하면 범행이 들통날 게 뻔한데, 한 순간 어리석은 욕망에 사로잡혀 일을 저지르고는 고통 속에 삶을 보내잖아요. 인간의 어리석음, 죄책감이라는 면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김지나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맥베스’가 더 보고 싶어지네요. 꼭 가서 보겠습니다.

김소희 감사해요.

김지나 오랫동안 연기를 하셨는데, 하기 쉽다거나 슬럼프는 없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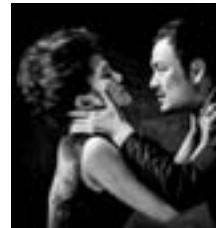
김소희 연기 초반에는 그랬는데, 그 이후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연극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영혼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라, 무당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걸 제대로 표현해야 하는 것만 생각했죠.

김지나 향후에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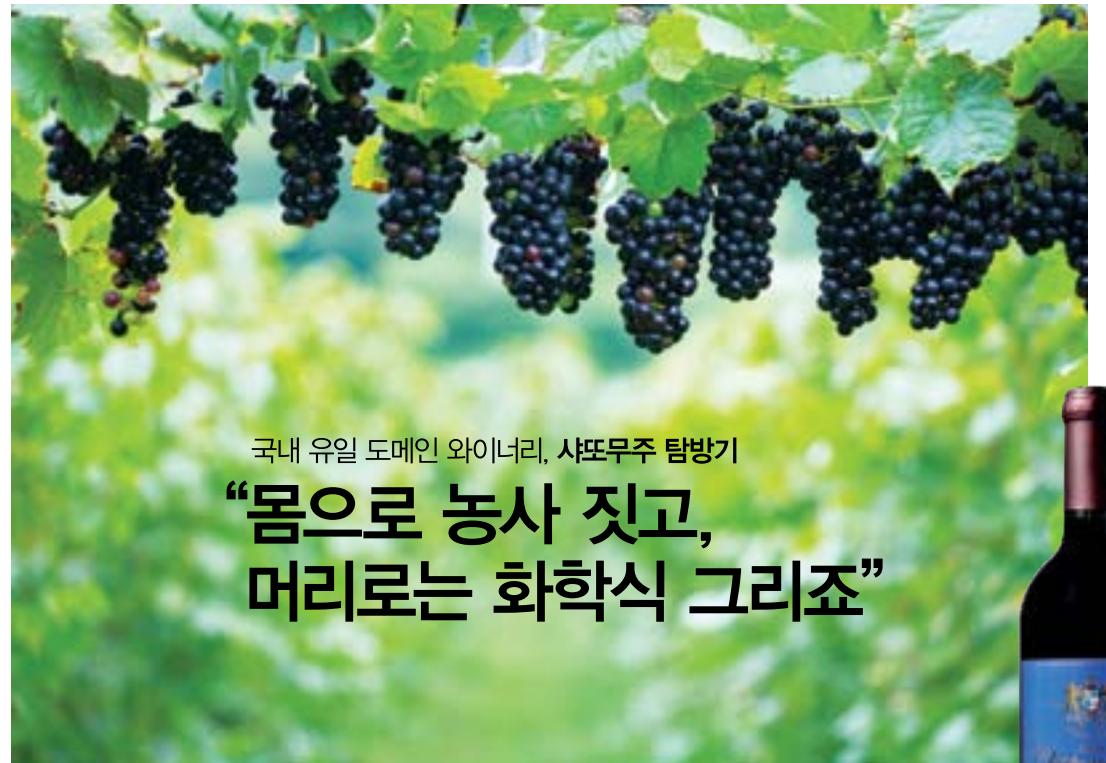
김소희 특별한 계획은 딱히 없는데, 일단 연희단거리패 식구가 많아져서 헤쳐 나가는 것이 우선이고요. 배우로서는, 음, 배우는 정년이 없는 것이 장점이에요.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역할이 주어지고요. 아마 죽을 때까지 배우로서 계속 미지의 세계를 탐구해야겠죠. 예상과 달리 배우는 안정적 직업입니다. 조직의 이해 관계 때문에 회사를 떠날 일도 없고, 본인만 열심히 잘 하면 계속 할 수 있어요.

김지나 오늘 저도 연기에 대해 조금은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감사드려요.

김소희 연극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연극 많이 보러 오세요.❶



김소희 배우가 출연하는 국립극단의 ‘맥베스’는 3월 8~23일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된다.



## 국내 유일 도메인 와이너리, 샤또무주 탐방기 “몸으로 농사 짓고, 머리로는 화학식 그리조”

와인이라면 으레 수입포도주를 떠올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창고 가득 오크통이 쌓여있는 와이너리의 풍경은 낯설기만 하다. 그런데 자신이 수확한 포도로 와인을 빚는 '도메인 와이너리'가 국내에도 있다고 하여 찾아가 보았다. 농부의 마음으로 머루(포도의 일종)를 키우고 장인정신으로 술을 담근다는 샤또무주의 조동희 대표를 통해 우리 농업의 색다른 미래를 보았다.

2월 27일 서울엔 바람을 타고 날아갈 것이라던 미세먼지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러나 4시간에 걸쳐 242km를 달려온 전북 무주는 새파란 하늘에, 봄빛이 완연했다. 주말이면 진입하는데 한 시간이 걸린다던 무주리조트 입구도 한산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에는 녹지 않은 눈 위로 간간이 스케어들이 보였다.

해발 900m에 위치한 샤또무주 농장에 다다르자 '언덕 위의 하얀 집'이 보였다. 2008년 유럽 스타일로 지은 와인 시음·체험장이다. 마카오 와인 박물관의 모양을 참고했다고 한다. "기왕 짓는 거, 창고처럼 짓기보다는 재밌게 지어보고 싶었습니다. 비용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조



원로까지 직접 재배하는 도메인 와이너리는 고유성을 간직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샤또 무주(사진·대표 조동희)는 국내 유일의 도메인 와이너리를 지향한다.

동희 대표(61)가 취재진을 반긴다.

겨울이라 3만㎡에 이르는 머루 농장은 나무 줄기만 남아 있었고, 조 대표는 잠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올 1월 설 명절을 앞두고는 주문이 밀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숙성된 와인을 병입하고 마개를 닫는 것은 모두 전용 기계를 통해 이뤄지지만, 자동화되지 않아 사람이 일일이 작업을 해야 한다. 조 대표 훌로 이 곳에서 먹고 자며 때 되면 농사짓고, 수확하면 와인을 담근다. 제조업이라기보다는 농업에 더 가까운 모양새다. 샤또무주의 연 판매량은 3만 병으로 대량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다.

샤또무주  
머루와인  
드赖이는 '2013  
코리아 와인  
어워즈'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 청정지역 무주에서 직접 머루 재배

조 대표는 원래 쌍방울(현 트라이브랜즈)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다. 속옷도 패션인자라 1980년대 프랑스 출장을 자주 갔다. 라코스테 브랜드를 만드는 드방레이와 제휴해 '스킹달'이라는 브랜드를 국내 출시하기도 했다. 거기서 생산관리 시스템을 배웠고, 프레타포르테 패션쇼를 참관하기도 했다. 장기 출장 중 쉬는 날에는 보르도의 와이너리 탐방을 갔다. 국내에 와인 열풍이 불기 20년 전이다.

쌍방울이 무주리조트를 개발하고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를 유치하면서 조 대표는 1995년부터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에 나섰다. 국제대회에 걸맞은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전 세계의 리조트란 리조트는 다 돌았다. 일본,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세계일주를 두 번 했다'고 할 정도다. 세계뿐만 아니라 숙소를 짓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느라 무주도 살살이 뒤졌다.

프랑스와 무주에서의 경험은 지금의 샤또무주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IMF 위기 직후인 1999년 회사를 나오게 된 조 대표는 지금의 농장을 매입하고, 와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무주는 반딧불이 군(郡)의 상징물일 정도로 청정지역이다. 천혜의 환경 덕에 모든 농산물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가깝게 재배된다. 별이 잘 들고 물빠짐이 좋은 곳을 찾아 지금의 위

치에 자리 잡았다. 첫 3년은 머루 재배만 했다. 2000년에 회사의 부름을 받고 2002년까지 근무하는 동안은 지인에게 재배를 맡겼다. 재배한 머루는 시장에 내다 팔았다.

2003년 퇴직금을 털어 와인 제조시설을 갖추고 본격적인 와인 제조를 시작했다. 프랑스의 작은 와이너리 방식으로 직접 재배한 머루를 이용해 손수 와인을 만든 것. 처음부터 큰 돈을 뜯었지만, 직접 와인을 만든다는 재미에 푹 빠졌다. 한양대 화학과 출신답게, 몸으로는 농사를 짓고 머리로는 알콜의 분자식을 그렸다. 취재진에게 알콜 숙성의 원리를 화학식을 그려가며 설명하는 조 대표의 눈이 어린 아이처럼 반짝반짝 빛났다.

### 남은 생애는 와인 고급화에 매진

머루의 학명은 '비티스 아무렌시스(Vitis Amurensis)'로 '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처럼 포도의 일종이다. 흔히 헛갈리기 쉬운 다리는 야생키위, 복분자는 야생딸기다. 다래와 복분자는 즙을 내어 먹지만 와인으로 만들기엔 적합하지 않다. 또한 국내에서 재배되는 포도는 대부분 식용으로 유기산 함량이 0.3% 수준이다. 이 포도로 와인을 만들면 발색이 되지 않아 화이트와인처럼 색이 없고, 1~2년이 지나면 김빠진 맥주처럼 맛이 없다. 무주산 머루는 유기산 함량이 0.6% 이상으로 와인에 적합하

다. "보존감이나 바디감에서 외국산 와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조 대표의 말이다.

수확된 머루는 파쇄와 알코올 발효를 거쳐 2년간 숙성과정을 거친 후 병입되어 판매된다. 지난해부터는 프랑스에서 들여온 20개의 오크통에서 마지막 한 달 반의 추가숙성을 거친 제품을 팔고 있다. "프랑스 와인 맛의 3분의 1은 오크가 만드는 겁니다. 한국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오크통 숙성인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선 것이죠." 미세한 오크향이 스며든 것을 전문가들이 먼저 알아봤다. 지난해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가 전국의 와이너리를 대상으로 한 '2013 코리아 와인 어워즈'에서 '샤또무주 머루와인 드라이'가 대상(Grand Gold)을, '샤또무주 머루와인 스위트'가 금상(Gold)을 터였다. 조 대표의 오크통이 화제가 되면서 국내 와이너리들 중에서도 오크통 숙성을 시도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조 대표는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도메인 와이너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한국 와인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하고 한 병에 싫만 원 넘는 와인을 못 만들라는 법 있나요?" 샤또무주의 머루와인(드라이·화이트)은 750ml 한 병에 2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작지만 강한 와이너리, 샤또무주가 우리 농업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❶



1 해발 900m에 위치한 샤또무주의 농장. 3만㎡ 넓이에서 연간 20톤의 머루를 수확한다.



2

3



3 농장 한가운데 있는 샤또무주 시음·체험장. 와인 애호가들에게는 필수 관광코스다.



## 산업부, 주요 업종단체와 통상현안 간담회 개최

3월 7일(금)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섬유 등 총 10개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들과 통상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과 한·중 FTA 등 최근 통상현안에 대해 우리 업종단체의 이해 제고와 소통강화 방안, 업종단체의 통상 지원기능 확대 등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윤 장관은 “TPP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 기업들의 TPP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정부와 협단체가 우리기업들에 대한 TPP 인식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협단체들 또한 TPP가 향후 우리기업들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정부와 함께 주요 회원사 대상 TPP에 대한 이해 제고와 대응방안 모색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참여 협단체 자동차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기산업진흥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 제8차 FTA 활용촉진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8일(금) 11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8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KOTRA 10층 간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FTA 지원정책의 조정협의체인 '2014년 FTA 활용촉진협의회 운영계획' 보고를 통해 기업의 FTA 활용 지원뿐만 아니라, FTA를 활용한 투자유치 활성화, FTA 국내 보완대책 등 논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매회 차별로 기업애로해소 방안을 논의하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 및 유관기관은 '각 기관별 2013년 활용지원실적 및 2014년 추진계획' 보고, 2013년 지원 실적을 점검하여 2014년에는 보다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김재홍 산업부 1차관은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내실화 방안을 5월까지 마련하는 한편, 한·중 FTA에 대비한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한·뉴질랜드 FTA 공식협상(제5차) 재개

제5차 한·뉴질랜드 FTA 공식협상이 2월 17일(월)~21일(금)간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됐다. 금번 제5차 협상에서 양측은 시장접근 협상 및 협정문 전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핵심 쟁점인 시장접근 협상과 관련, 양측은 상호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상품양허 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나, 우리 농산품에 대한 민감성 보호 방안 등 상호 상당한 입장차를 보임에 따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타 서비스·투자 부문 양허 및 협정문 협상에 대해서는 2010년 5월 4차 협상 중단 이후 새롭게 전개된 상황 등을 감안해 협정문 내용을 개선·보완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한·뉴질랜드 양측은 상호 이익의 균형을 맞춘 양국 간 FTA 타결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향후 회기간 협상, 텔레컨퍼런스(Teleconference)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월 말~4월 초 제6차 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했다.

## 한·인도네시아 CEPA 제7차 협상 개최

한·인도네시아 CEPA 제7차 협상이 2월 25(화)~28일(금)간 서울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및 협력 등 전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개도국과의 상생형(win-win) FTA의 첫 번째 사례로서, 그간 협상을 통해 우리측은 보다 강화된 경제협력 챕터를 통한 인도네시아 산업 발전 및 우리 기업 진출 기반 확보 등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상품 분야에서 양측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 문제,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우리 현지진출 기업에 대한 보호 수준 문제 및 인도네시아측의 투자 확대 요구 등 주요 잔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상존하고 있다.

2012년 7월 개시된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은 2013년 10월 양국 정상회담 시 2013년 말 까지 실질타결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나, 현재 까지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측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한편, 우리측 핵심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인도네시아측을 계속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 한·일본 TPP 예비 양자협의 개최

한·일간 TPP 예비 양자협의가 3월 6일(목) 오전 동경에서 우리측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과 일족 루오카 코지(Tsuruoka Koji) TPP 수석대표 간에 개최됐다. 이번 예비 양자협의에서는 TPP 협상 주요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의 TPP 참여 문제와 관련한 양국간 입장도 교환했다. 일본측은 우리의 TPP 관심표명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우리의 TPP 참여 여부 및 향후 참여 의견을 교환했다.

결정시 참여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우리측은 ①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 협의 결과, ②2014년 3월말 원료 예정인 TPP 산업별·분야별 심층영향 분석 결과, ③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TPP에 대한 우리의 최종 입장을 정립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 한·중·일 FTA 제4차 협상 개최



한·중·일 FTA 제4차 협상이 3월 4(화)~7일(금) 4일간 서울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고, 중국측은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를, 일본측은 나가미네야스마사(長嶺安政) 외무성 경제 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참석했다.

금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종족, 지재권 분야의 작업반 회의와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식품분야의 전문가 대화를 개최하여 협정문 포함 주요 요소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TPA



최근 미국의 TPP 관련 보도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은 국제교섭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의 회가 행정부에게 위임한 무역협상 권한이다. 의회는 대통령이 체결한 무역협정 내용에 대해 수정할 수 없고 '가결'과 '부결'로 채택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은 무역협상권을 행정부가 아닌 의회가 갖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행정부가 통상협상에 합의한 뒤에 도 여론에 민감한 미국 의회가 협상 내용의 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국제협상에 속도를 내기가 어려워진다. TPA는 이렇듯 미국 헌법에 보장된 의회의 무역협상권을 일정한 기간 동안 행정부에 위임하여 다른 나라와의 통상교섭 시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미국의 독특한 제도이다.

과거에는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으로 불리던 것으로, 1974년 제정된 무역법에 의해 탄생한 이후 20년간 연장 또는 부활되어 오다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비준 이후 한동안 소멸되었다. 2000년 조지 W. 부시가 제43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미주자유무역(FTAA), 자유무역 협정(FTA) 교섭 등 무역자율화를 통한 경기부양 등을 강조하며 재도입을 강력히 추진, 2002년 8월에 부활했다. 대통령은 협상 개시 90일 이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협정 체결 90일 이전에 의회에 체결 의사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 독자의 소리 &lt;함께하는 FTA&gt;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중 FTA 대비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대중국 수출 전략'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FTA 하면 으레 우리 농축산물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차별적 경쟁력과 함께 10억이 넘는 중국 소비시장의 매력 또한 기회로 삼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경석 대전 중국 문화동

이렇게 좋은 정보를 담고 있는 책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읽게 되었어요. 특히 FTA 잡지에서 제주

도 초콜릿 박물관 소식을 듣다니 놀랍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제가 초콜릿 매니아거든요. 올 봄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올 계획인데, 초콜릿박물관에 꼭 들려봐야겠습니다.

이선애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캐나다·호주·뉴질랜드 FTA 기사를 보면 서 우리나라의 승용차나 자동차 부품의 수출 확대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이런 영연방 FTA 협상 가속화로 우리나라의 많은 제품들이 세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도 값싸고 질 좋은 낙농품이나 쇠고기 등을 소비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로서는 기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에 특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희 창원시 진해구 가주로

소치 올림픽 기간 동안 양념치킨이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제 한국의 보편적인 음원 문화로 자리 잡은 양념치킨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기사를 읽고 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인도·캐나다·칠레 무

역성과와 교역량, 관세양허 내용 등 TV 뉴스나 일간지보다 더 넓고 깊은 내용을 실어주어서 FTA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영신 부산시 서구 보수대로

칠레의 FTA 관련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칠레와의 FTA를 체결하면서 칠레산 포도를 쉽게 접하게 된 과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내수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한 칠레야말로 내수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가 본보기 사례로 주목할 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 남극

지구상의 마지막 미개척 대륙,  
과거의 비밀을 간직한 자연과학의 거대 실험장,  
막대한 자원을 보유한 기회의 대륙!

우리나라의 두 번째 남극기지 "장보고과학기지"를 통해  
극지의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발견하여  
극지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 ▣ 기지 개요

- 위치 : 동남극 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만
- 기간 / 총사업비 : 2006 ~ 2014년 / 1,067억원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4,458m<sup>2</sup>  
(건물 16개동 및 시설·장비 24개소)
- 수용인원 : 동계 15명, 하계 60명

## ▣ 활용 계획

- 남극대륙 중심의 기후변화(빙하, 대기과학, 지체구조, 생태계 변화 등), 우주과학(고층대기, 운석, 우주 생물 등) 연구 중점 수행
- 본격적인 남극 내륙 진출의 허브기지로 활용

# FTA 활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 3 8 0**

FTA 콜센터 1380에서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 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컨설팅, 정보제공,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보제공

FTA 활용정보 통합제공  
해외 전문가 조성 FTA 활용 비즈니스전략 정보 제공



▶ 교육 및 흥보

FTA 실무교육 제공 / 대기업 협력업체 맞춤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회사별 원산지관리시스템 Edu-suting(교육+컨설팅)



▶ 예로해소

FTA 활용 예로사항 폐소 및 정책 간의 / 협정문 및 미행 관련법령 유권해석 지원  
FTA 원산지 증명서 증명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



▶ 컨설팅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 H6 종목분류, 인증수출처, 원산지증명 관련 컨설팅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사후감증 대응 컨설팅